
20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 설명회

2023. 6.





▷ 목 차

1. 20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 설명 1
2. 20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계획 5
3. 2024년 생생문화유산 사업 공모계획 27
4. 2024년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계획 43
5. 2024년 문화유산 야행사업 공모계획 59
6. 2024년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계획 75
7. 2024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공모계획 91

**1. 20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 설명**

20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 설명회 개최

I 추진 목적

- '24년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지자체 원활한 공모 추진 지원
-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의 변경된 정책 방향 공유 및 지자체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문화유산 발전 방안 모색 등

II 설명회 개요

- 일 시 : 2023. 6. 27.(화) 13:3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 참석대상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활용사업 담당자
 - * 당일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실시간 온라인 영상 시청 가능(문화재청 유튜브)
- 주요내용
 - '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 계획 안내
 -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관련 지자체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등

| 시 간 | 내 용 | 비 고 |
|------------------|------------------------|-------------|
| 13:00~13:30(30') | 참석자 등록 | |
| 13:30~13:40(10') | 인사말씀 | 활용정책과장 |
| 13:40~14:30(50') | '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 안내 | 활용정책과 |
| 14:30~15:00(30') |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교육 | |
| 15:00~15:20(20') | 지역문화유산 활용 해외 사례 소개 | 한국문화재 정책연구원 |
| 15:20~16:00(40') |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 | |
| 16:00 | 마무리 및 폐회 | |

* 상기 일정 및 진행방법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20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 계획**

20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 계획

1. 공모 개요

- (공모대상)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지자체 경상보조(국비 40%)
- (공모절차)

| 계획공고 | 사업설명회 | 신청/접수 | 심사 | 결과발표 |
|--------------|--------------|-----------------------|---------|---------------|
| '23.6.19.(월) | '23.6.27.(화) | '23.7.17.(월)~7.31.(월) | '23. 8월 | '23.9.15.(예정) |

2. 중점 추진사항

(추진 배경)

- 문화유산 분야 전체적인 **정책방향 변화**
 -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체제로 이행, 안전관리 강화, 브랜드 육성 등
- '24년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위한 **보조금 예산 축소** 예상
 - 생생, 향교서원, 고택종갓집사업 보조금 전년대비 대폭 감축 예정
- '23년 **보조금 감사 후 제도개선 요구사항** 발생
 - 기획비 항목 삭제, 1인의 수령금액 상한액 설정, 일상관리 경비 불인정, 유료사업 재검토 등

(세부 사항)

【문화유산 정책변화 반영】

- '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소주제로 **기후변화 대응** 선정 **【붙임 1】**
 - (사업운영)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지역농수산물 이용 등
 - (사업내용)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세부프로그램의 하나로,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문화유산 강연·공연, 폐기물 업사이클링, 자연유산 모니터링, 문화유산 탐방과 관련된 플로깅, 그 외 친환경 농업활동 등
- * 예 : 전통문화에서 찾는 기후변화대응 강연(○), 문화유산 보존·활용과 기후변화 대응사례 강연(○)/문화유산과 관련 없는 기후변화 강연·공연, 플로깅 등(x)

- 종전의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변경
 - 국가유산 전환 관련,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명칭 **공모**('23. 하반기)
- 공모신청서에 **안전관리** 항목 보완
- **지역문화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예비목록 선정사업('23. 연말 선정 예정)은 '25년까지 사업 인정(단, 예산액은 별도 검토)

【보조금 지원예산 조정 및 집행기준 강화】

- 사업유형별 **보조금 지원예산 조정** **【붙임 2】**
- **예산지원 범위 및 기준 정비**
 - **기획비 항목 삭제**, 업무추진비 항목(전체 예산의 1%, 1,000천원 이내) 명시, 감사비·공연출연수당 지급기준 간소화, 회계검증 비용 인정(1억원 이상 사업)
 - **1인에게 지급되는 총 경비(인건비, 수당 등)가 인건비 상한액 기준 초과 시 집행 불인정**, 일상관리(환경미화 등), 내부직원 대상 워크숍 비용 불인정
- **공모 가점 변경**

| '23년 | '24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우수사업(1점) • 사회적 약자연계 및 여행상품 기획운영(1점) • 지역주민/단체가 기획운영(1점) • 유료 프로그램 운영(1점) • 문화재 활용사업 전담조직(1점) • 둘 이상 지자체 협업사업(2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우수사업(1점) • (삭제) • (삭제) • 유료 프로그램 운영(1점) • 문화유산 활용사업 전담조직(1점) • 둘 이상 지자체 협업사업(1점) •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1점 신규) |

- * 사회적 약자연계 및 여행상품 기획운영, 지역주민/단체가 기획운영은 **우수사업 선정기준**으로 변경
- * 가점 및 추가지원 예산 수령 후 미실시한 경우 다음연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에 감점 (항목당 2점 이상)

□ 추진배경 및 목적

- 국가유산의 보존 활용에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관련 신규 프로그램 발굴 필요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문화유산 보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탄소발자국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의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 세부 착안내용(예시)

① 사업 운영에 기후변화 대응방안 포함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차량 공유서비스 이용 확대 등 차량 운행 최소화로 에너지 소비 감축(예 : 대중교통 이용해 활용현장을 방문한 경우 기념품 제공). 그 외, 지역별로 문화유산 내외 관광객 유치와 수송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패키지화 또는 **친환경 수단**을 활용, 작게는 문화유산 안에서 **도보 및 친환경 수단**의 활용
- 문화유산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 자원 낭비 방지(식음 관련 프로그램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다회용 또는 자연분해 소재 사용)
- 제로웨이스트 내부 **폐기물에 대한 친환경 처리**. 방문객들의 숙박 및 편의 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폐기물의 양 또는 처리방식에 대해 자원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
- **안내홍보물의 디지털화**
- 다양한 **친환경 제품** 사용(예: 문구류, 생활용품 등)
- 지역의 농수산물 이용 등

② 사업 내용에 기후변화 대응방안 포함

- 자연유산 **모니터링(생물종 보존, 복원 강화)**
- 환경 및 기후 관련 강의, 공연, 전시, 체험
- 문화유산 탐방과 연계한 **플로깅을 통해 문화유산 주변 환경정비**(예 : 참여 기념품으로 플로깅 키트 제공)
- 폐기물의 재활용(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등 친환경 처리
- 수목식재 등

<참고> '23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중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예시

□ 생생 문화유산

| | |
|---------|---|
| 사업명 | 인천 용진군 : 지구의 시작 백령도! 우리 함께 우주와 만나요! |
| 대상문화유산 | 용진 백령도 두무진(명승) 용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천연기념물) 용진 백령도 사곶 사진(천연기념물) 등 |
| 프로그램 내용 | - 사곶 사빈 또는 콩돌해안 현장체험 모니터링 - 백령도 문화유산 보호활동 - 문화유산 보존 관리환경 모니터링 - 문화유산 주변 정화활동 및 안전관리 활동 |

| | |
|---------|--|
| 사업명 | 충남 공주시 : 신 충청감영 공주로 |
| 대상문화유산 | 선화당(도유형), 포정사문루(도유형) |
| 프로그램 내용 | - 조선시대 생업이 대부분 농업, 물 관리 위한 노력과 현대의 기후 문제를 생각해보는 기후 및 환경 관련 교육 - 축우기 만들기 |

| | |
|---------|---|
| 사업명 | 충남 예산군 : 생생, 세상을 향해 비상하는 황새 |
| 대상문화유산 | 황새(천연기념물) |
| 프로그램 내용 | - 마을 주민과 친환경 벼농사(모내기-수확-탈곡)를 체험, 황새 서식지 보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습지 활동(채집-관찰-방사-세밀화그리기), 습지 보존의 중요성과 친환경 생태환경의 소중함 느끼기 |

| | |
|---------|------------------------------------|
| 사업명 | 전북 남원군 : 백두대간 속 생생한 문장스 |
| 대상문화유산 | 남원 황산대첩비지(사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사적) |
| 프로그램 내용 | 가야 유적지 탐방 플로깅 진행 |

| | |
|---------|--|
| 사업명 | 전남 광양시 : 성들 사이에 피어난 현호색 |
| 대상문화유산 | 광양 마로산성(사적), 광양읍수와 이팝나무(천연기념물) 등 |
| 프로그램 내용 | - 환경을 생각하는 업사이클링 산성 & 집수정 만들기 - 환경 마당극 공연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제고 |

| | |
|---------|---------------------------------------|
| 사업명 | 경북 영천시 : 영천 생생문화재, 여기요 |
| 대상문화유산 | 영천 청제비(보물), 영천 조양각(도유형), 영천정제(도기념물) 등 |
| 프로그램 내용 | 신라시대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청제비 가꾸기(플로깅) |

□ 고택종가집

| | |
|---------|----------------------------|
| 사업명 | 울산 울주군 : 근재공 고택, 울산 근대를 걷다 |
| 대상문화유산 | 울산 학성이씨 근재공 고택(문화재자료) |
| 프로그램 내용 | 해양폐기물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

붙임2

사업유형 및 지원예산

| 생생 | | |
|-------------------|---------|---------|
| 구분 | '23년 | '24년 |
| 시범육성형 (1~2년차) | 5천만원 이내 | 4천만원 이내 |
| 집중육성형 (3~5년차) | 1억원 이내 | 8천만원 이내 |
| 지속발전형 (6년차 이상) | 2억원 이내 | 1억원 이내 |

| 향교서원 | | |
|-------------------|---------|---------|
| 구분 | '23년 | '24년 |
| 시범육성형 (1~2년차) | 5천만원 이내 | 4천만원 이내 |
| 집중육성형 (3~5년차) | 1억원 이내 | 8천만원 이내 |
| 지속발전형 (6년차 이상) | 2억원 이내 | 1억원 이내 |

| 고택 · 종갓집 | | |
|----------|--------|---------|
| 구분 | '23년 | '24년 |
| 일반체험형 | 1억원 이내 | 8천만원 이내 |
| 숙박체류형 | 2억원 이내 | 1억원 이내 |

| 문화유산 야행 | | |
|-----------------|--------|------|
| 구분 | '23년 | '24년 |
| 표준형 및 네트워크형 | 5억원 이내 | 좌동 |
| 시범형(마을 공동체형) | 2억원 이내 | 좌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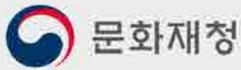
| 전통산사 | | |
|-------------------|---------|------|
| 구분 | '23년 | '24년 |
| 시범육성형 (1~2년차) | 4천만원 이내 | 좌동 |
| 집중육성형 (3~5년차) | 8천만원 이내 | 좌동 |
| 지속발전형 (6년차 이상) | 1억원 이내 | 좌동 |

* 사업별 심사기준은 '23년도와 동일

2024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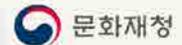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 설명회

2023년 6월 27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목차

- 1 사업 추진경과
- 2 2024년도 공모 계획
- 3 2024년도 공모 세부내용
- 4 향후 계획



1.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추진경과



| 연도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 건수 | 4 | 8 | 20 | 29 | 30 | 45 | 70 | 105 | 88 | 120 | 130 | 132 | 159 | 160 | 165 | 165 |
| 예산 (억원) | 1 | 2 | 5 | 8.5 | 8.5 | 12 | 18 | 20 | 20 | 28 | 31 | 31 | 46 | 46 | 46 | 4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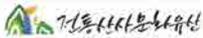


| 연도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 건수 | - | - | - | - | - | - | 38 | 71 | 77 | 87 | 95 | 97 | 113 | 116 | 108 | 110 |
| 예산 (억원) | - | - | - | - | - | - | 12 | 21 | 22 | 28 | 31 | 31 | 51 | 51 | 52 | 52 |

1.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추진경과



| 연도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
| 건수 | - | - | - | - | - | - | - | - | - | 10 | 18 | 25 | 27 | 36 | 42 | 45 | 47 |
| 예산 (억원) | - | - | - | - | - | - | - | - | - | 30 | 45 | 50 | 50 | 50 | 63 | 73 | 73 |



| 연도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
| 건수 | - | - | - | - | - | - | - | - | - | - | 25 | 30 | 34 | 38 | 42 | 43 | 51 |
| 예산 (억원) | - | - | - | - | - | - | - | - | - | - | 10 | 10 | 10 | 10 | 10 | 10 | 15 |



| 연도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
| 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 40 | 45 | 44 |
| 예산 (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 25 | 25 | 25 |

1.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추진경과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현황 (2023)

| 구분 | 생생 문화유산 사업 |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
|------|---|---|
| 사업기간 | '08년~계속 | '14년~계속 |
| 국비지원 | 46억원 | 52.48억원 |
| 보조율 | 국비 40% | 국비 40% |
| 사업대상 | 165개소 | 110개소 |
| 사업내용 | 지역 소재 대표 문화유산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하여 교육, 공연, 체험 등의 관광자원으로 창출한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기획·운영 | 향교·서원 문화유산, 배향 인물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하여 인문정신 함양, 교육, 공연, 답사 등의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기획·운영 |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
| 수혜자 | 일반 국민 | |

1.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추진경과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현황 (2023)

| 구분 | 문화유산 야행사업 |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
|------|--|--|---|
| 사업기간 | '16년~계속 | '17년~계속 | '20년~계속 |
| 국비지원 | 73억원 | 15억원 | 25억원 |
| 보조율 | 국비 40% | 국비 40% | 국비 40% |
| 사업대상 | 47개소 | 51개소 | 44개소 |
| 사업내용 | 문화유산이 집적된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유산 야간 향유 프로그램 기획·운영 | 사찰이 보유한 문화유산과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문화유산 해설, 강의, 체험, 공연 등 산사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기획·운영 | 고택 및 종갓집의 유산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전통생활모습과 결합하여 교육, 공연, 숙박, 체험 등 향유 프로그램 기획·운영 |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 |
| 수혜자 | 일반 국민 | | |

공모
기간

(공모) '23.6.19.(월)~7.31.(월)

(접수) '23.7.17.(월)~7.31.(월)

공모기간 및 신청마감 일시 유의 / 7.31.(월) 18:00 이후 접수 불가, 이메일 제출도 동일

신청 서류 및
제출 절차

| 신청 서류 | 제출 절차 |
|---------------------------------|---|
| 1. 공모현황 총괄표 | ▷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는 소관 기초자치단체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문화재청에 제출 생생 문화유산 향교·서원 고택·종갓집 → 공병주 주무관 kong9217@korea.kr 문화유산 야행 전통산사 ICT 실감콘텐츠 → 이재우 주무관 jaiwoos@korea.kr |
| 2.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내역서 포함) | |
| 3.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신청서 (선택사항) | |
| <지자체 대상 공모로서, 민간 신청 불가 > | |

'24년에 달라지는 점

- 1 문화유산 정책변화에 대응**
 *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체제로 이행, 안전관리 강화, 브랜드 육성 등
- 2 보조금 축소 대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지원예산 조정**
 * 생생, 향교서원, 고택종갓집 사업 보조금 전년대비 대폭 감축 예정
- 3 예산 지원기준 변경**
 * 기획비 항목 삭제, 수당 지급기준 간소화, 회계검증 비용 인정 등
- 4 공모 가점 변경**
 * 가점 항목 일부 삭제 및 신설, 감점 사항 도입

'24년에 달라지는 점

1 문화유산 정책변화에 대응

- * 20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과 기후변화대응 연계
 - ① (사업내용)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문화유산 강연· 공연, 폐기물 업사이클링, 자연유산 모니터링, 문화유산 탐방과 관련된 플로깅, 그외 친환경 농업활동 등
 - ② (사업운영)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지역농수산물 이용 등
- * 종전의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변경
→ 국가유산 전환 관련,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명칭 공모('23. 하반기)
- * 공모신청서에 안전관리 항목 보완
- * 지역문화유산 활용 대표브랜드 예비목록 선정사업('23년말 선정 예정)은 '25년까지 사업 인정

'24년에 달라지는 점

2 보조금 축소 대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지원예산 조정

- * 생생 문화유산 사업,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의 지원금액 축소

| 생생, 향교서원 | | |
|----------------|---------|---------|
| 구분 | '23년 | '24년 |
| 시범육성형 (1~2년차) | 5천만원 이내 | 4천만원 이내 |
| 집중육성형 (3~5년차) | 1억원 이내 | 8천만원 이내 |
| 지속발전형 (6년차 이상) | 2억원 이내 | 1억원 이내 |

| 고택종갓집 | | |
|-------|--------|---------|
| 구분 | '23년 | '24년 |
| 일반체험형 | 1억원 이내 | 8천만원 이내 |
| 숙박체험형 | 2억원 이내 | 1억원 이내 |

'24년에 달라지는 점

3 예산 지원기준 변경

- * 기획비 삭제(보조사업 감사결과 반영),
업무추진비(전체 예산의 1%, 1% 이내여도 1,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명시,
강사비 · 공연출연 수당 지급기준 간소화,
회계검증 비용 인정(1억 이상 사업/3백만원 까지)
- * 1인에게 지급되는 총 경비(인건비, 수당 등)가 인건비 상한액 기준 초과 시,
집행 불인정 추가
- * 일상관리(환경미화 등), 내부직원 대상 워크숍 비용 불인정 추가

'24년에 달라지는 점

4 공모 가점 변경

| 2023년 | 2024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우수사업(1점) • 사회적약자연계 및 여행상품 기획운영(1점) • 지역주민/단체가 기획운영(1점) • 유료 프로그램 운영(1점) • 문화재 활용사업 전담조직(1점) • 둘 이상 지자체 협업사업(2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우수사업(1점) • 삭제 • 삭제 • 유료 프로그램 운영(1점) • 문화재 활용사업 전담조직(1점) • 둘 이상 지자체 협업사업(1점) •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기획(1점, 신규) |

- * 사회적 약자연계 및 여행상품 기획운영, 지역주민/단체가 기획운영은 가점사항에서 우수사업 선정기준으로 변경
- * 가점 및 추가지원 예산 수령 후 미 실시한 경우 다음연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에 감점 처리(각 항목당 2점)

추가 지원 사항 ('23년도와 동일)

1 ICT 활용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확장현실(XR), 메타버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 미디어아트 등

2 예산 추가지원 (생생, 향교·서원, 고택·종갓집)

- * (생생, 향교·서원, 고택·종갓집)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시 지원금액의 10% 범위 내 예산 추가 지원
- * (고택·종갓집) 집성촌 내 주변 숙박지원이 가능한 경우 지원금액의 10% 범위 내 예산 추가 지원

(1)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개발

1 지원내용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 (예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확장현실(XR), 메타버스 (Metaverse),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 미디어아트 등

2 대상사업 : 생생, 향교·서원, 전통산사,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야행 제외)

3 선정절차 : 위 4개 분야 사업 중 선정(건별 국비 1억원 이내)

* 본 사업 금액과 별개로 신청하며, 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최종 지원금액 결정
(본 사업이 '24년 사업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4 신청방법 : 본 사업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추가 제출

5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 (2배수 이내) → 2차 PT심사 → 최종 선정

(2)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1 지원내용 :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한 예산 추가지원

* 외국인 대상 별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경우, 프로그램 일부 회차를 외국인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모두 인정

2 대상사업 : 생생, 향교·서원,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야행, 산사 제외)

3 지원규모 : 지원금액의 10% 범위 내 (단, 신청금액 범위 내)

* (예시) 생생 사업의 본 사업 신청금액이 6,000만원이고 심사에서 3,6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된 경우 ⇨ 외국인 프로그램 운영 시 최대 360만원 추가하여 최종 3,960만원 지원

4 신청방법 : 본 사업 신청서에 해당 내용 작성

(3) 주변 숙박 지원 프로그램 운영

1 지원내용 : 집성촌 내 위치하여 주변의 숙박 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 추가지원

2 대상사업 :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3 지원규모 : 지원금액의 10% 범위 내 (단, 신청금액 범위 내)

* (예시1) 고택·종갓집 사업의 본 사업 신청금액이 6,000만원이고 심사에서 3,6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된 경우 ⇨ 주변 숙박 지원 해당 시 최대 360만원 추가하여 최종 3,960만원 지원

* (예시2) 고택·종갓집 사업의 본 사업 신청금액이 8,000만원이고 심사에서 75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된 경우 ⇨ 주변 숙박 지원과 외국인 프로그램 운영 둘 다 해당 시 최대 1,500만원 추가 가능하나, 최종 8,000만원 지원(신청금액 내)

4 신청방법 : 본 사업 신청서에 해당 내용 작성

그 외 공모 신청 시 유의 사항(1)

1 배정된 예산으로 추진 가능한 프로그램 내용 및 횟수 구성

* 생생, 향교서원, 산사 : 대표 프로그램 중심으로 심사 예정 (과다편성 지양), 소수 프로그램(3개 내외)의 밀도있는 운영 지향

2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지방비 매칭비율 준수 (국비 40%, 지방비 60%)

3 광역 시도에서 취합하여 제출

그 외 공모 신청 시 유의 사항(2)

4 세계유산은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신청 불가

* 세계유산 포함 대상은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신청

5 타부처 지원 사업 또는 문화유산 활용과 무관한 행사 지원 제외

- * (전통산사) 전통문화체험 지원사업(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등)/ 산사문화예술제/ 불교문화축전/ 종교행사(천도재, 위령제, 수령제 등)/ 특정일 개최 일회성 행사/ 사찰 권역을 벗어난 행사, 다도체험, 학술대회 등 제외
- * (고택·종갓집) 전통문화체험 지원사업(전통한옥 체험, 남도고택 체험 등)/ 종가음식 지원사업(종가음식 체험, 관광 등)/ 팜스테이 등 제외

<기타 제외 사항> 공모요건 미충족, 지방비 미확보사업, 행정사항(월보 제출 등) 비협조사업, 추진주체 간 마찰 발생에 따른 전년도 사업 차질, 보조금 집행점검에 불응하는 사업 등

(1) 사업비 지원 규모

생생 문화유산, 향교·서원, 전통산사

| 구분 | 시범육성형 | 집중육성형 | 지속발전형 |
|--------|------------|------------|-----------|
| 사업 기간* | 1~2년차 | 3~5년차 | 6년차 이상 |
| 사업비 | 국비 4천만원 이내 | 국비 8천만원 이내 | 국비 1억원 이내 |

* 최근 4년간('20년~'23년) 국비 미지원 년도가 있는 경우, 기 지원받은 사업기간 중 최대 3년까지만 인정(공모계획 참조)

문화유산 야행

| 구분 | 시범형(마을공동체형) | 표준형 및 네트워크형 |
|-------|-------------|-------------|
| 8夜 구성 | 3夜 이상 | 5夜 이상 |
| 사업비 | 국비 2억원 이내 | 국비 5억원 이내 |

(1) 사업비 지원 규모

고택·종갓집

| 구분 | 일반체험형 | 숙박체류형 |
|-------|-------------------------------------|--|
| 사업 특성 | 당일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 숙박 프로그램 상설 운영(연 10회 이상) 주변 생태·문화자원과 연계를 통해 방문객의 지역 체류 유도 |
| 체험 구성 | ①~⑥ 중 3가지 이상 (의/식/주 체험 중 하나는 필수) | ①~⑦ 중 5가지 이상 |
| 사업비 | 국비 8천만원 이내 | 국비 1억원 이내 |

〈체험 구성〉 ① 의(衣) 체험, ② 식(食) 체험, ③ 주(住) 체험, ④ 의례(儀禮) 체험,
⑤ 전통문화 체험, ⑥ 역사 체험, ⑦ 생태·문화자원 체험

(2) 심사 기준 | 생생 문화유산, 향교·서원, 전통산사

시범육성형

| 구분 | 세부항목 | 판단기준 |
|----------------|---------|-------------------------------------|
| 사업계획의 충실성 (30) | 계획의 적합성 | 계획의 구체성, 해당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이해 등 |
| | 콘텐츠 경쟁력 |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차별성 등 |
| 사업운영 역량 (40) | 사업수행 역량 | 지자체 추진의지,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등 |
| | 사업관리 | 홍보계획의 적절성, 지역주민 참여도 제고방안, 안전관리 계획 등 |
| 지속가능성 (30) | 기대효과 | 지속발전 가능성, 문화유산 향유 기여 등 |

집중육성형·지속발전형

| 구분 |
|----------------|
| 사업계획의 충실성 (20) |
| 사업운영 역량 (35) |
| 지속 가능성 (45) |

- 가점(각 1점) : 전년도 우수사업, 문화유산 활용사업 전담조직 설치 지자체, 유료 프로그램 운영, 둘 이상 지자체 협업,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기획
- 감점(각 2점) : 유료 프로그램, 둘 이상 지자체 협업, 기후변화 프로그램의 가점 신청 후 미실시 및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등 추가 예산 수령 후 미실시

(2) 심사 기준 | 문화유산 야행

시범형(마을공동체형)

| 구분 | 세부항목 | 판단기준 |
|----------------------|---------------------|---|
| 문화유산 야행 특성화 콘텐츠 (40) | 문화유산 정체성 반영 정도 | 사업이해도(개념, 방향 등), 지역 정체성 반영 여부 등 |
| | 대표 문화유산 활용 기획력 | 대표문화유산 선정 및 프로그램 활용, 대표 문화유산의 프로그램 필수 구성 여부 |
| | 인근 문화유산·문화시설 연계성 | 대상문화유산 전체 활용 여부, 인근 문화유산/문화시설 활용 등 |
| 사업운영체계 (50) | 사업수행 조직구성의 체계성, 전문성 | 조직구성의 체계성, 역할분담 전담조직 전문성 |
| | 협력적 거버넌스 조직 | 지역상권, 지역주민, 예술가 협력 |
| | 사업관리 역량 | 홍보계획 구체성, 문화유산 안전관리, 코로나 대응 체계 |
| 지속발전 가능성 (10) | 지역문화 활성화 기여도 |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자원 가능성 |
| | 자체평가 및 환류 | 자체평가 계획, 전년도 컨설팅 반영 |

표준형/네트워크형

| 구분 |
|----------------------|
| 문화유산 야행 특성화 콘텐츠 (40) |
| 사업운영체계 (40) |
| 지속발전 가능성 (20) |

(2) 심사 기준 | 고택·종갓집

일반체험형

| 구분 | 세부항목 | 판단기준 |
|----------------|----------|--|
| 사업계획의 충실성 (40) | 계획의 적합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홍보 타깃, 추진노력의 적절성 |
| | 프로그램 경쟁력 | 해당 문화유산 특성 반영 여부 수혜대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
| 사업운영 역량 (40) | 사업수행 역량 | 지자체 추진의지, 추진역량, 안전관리 체계, 코로나19 대응체계 등 |
| | 협력적 거버넌스 | 소유자(관리자) 참여 의사 지역단체와의 협력체계, 주민참여 방안 |
| 지속가능성 (20) | 기대효과 | 종가문화의 보전 및 향유 기여 프로그램 지속발전 가능성 |

숙박체류형

| 구분 |
|----------------|
| 사업계획의 충실성 (30) |
| 사업운영 역량 (50) |
| 지속 가능성 (20) |

- 가점(각 1점) : 전년도 우수사업, 문화유산 활용사업 전담조직 설치 지자체, 유료 프로그램 운영, 둘 이상 지자체 협업,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기획
- 감점(각 2점) : 유료 프로그램, 둘 이상 지자체 협업, 기후변화 프로그램의 가점 신청 후 미실시 및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등 추가 예산 수령 후 미실시

(3) 심사 방법

심사일정

서류 심사 (8월 중)

심사방법

내·외부 전문가 등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운영

| | |
|---------------------|---|
| [필수] 1차 서류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대상 : 지자체 공모신청서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심사위원 : 관련 분야 전문가 5~7명 내외(예정) |
| [필요시] 2차 PT 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대상 : 지자체 공모신청서 ○ 심사방법 : PT 심사 ○ 심사위원 : 관련 분야 전문가 5~7명 내외(예정) * ICT 활용한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은 PT 심사 필수 |
| 선정 결과 발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결과 발표 : 9월15일(예정) |

4. 향후 계획

| 추진 계획 | 일정 |
|-------------------------------|-----------------|
| 2024년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 | '23.6.19.~7.31. |
| 2024년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심사 및 선정 | '23.8월 |
| 2024년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선정 결과 사전통지 | '23.9월 |
| 2023년도 우수사업 선정 | '23.11월 |
| 2023년도 하반기 워크숍 개최 및 우수사업 시상 | '23.12월 |
| 20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운영 | '24.1월 ~ |

(참고)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문화유산 유유자적 SNS)

- 1 문화유산 유유자적 공식 누리집 (cha.go.kr/eventInfo/index.do)
- 2 문화유산 유유자적 인스타그램 ([instagram.com/uujj_cha](https://www.instagram.com/uujj_cha))
- 3 문화유산 유유자적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uu_cha)
- 4 문화유산 유유자적 카카오톡 채널 (pf.kakao.com/_YDLIs)

추가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교육

1 보조금 법령 개정

| | 현행 | 개정 |
|-----------------------------|--------------|--------------|
|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법률 개정 예정) | 10억 이상 보조사업자 | 3억 이상 보조사업자 |
| 외부검증 받는 정산보고서 대상(시행령 개정) | 보조금 총액 3억 이상 | 보조금 총액 1억 이상 |

2 부정수급확정 업무흐름

(e나라도움)부정수급 의심내역 통보 → (지자체)의심내역 점검 → (지자체) 부정수급 의심자 확정 또는 해제 → (중앙)의심자 확정 건에 대하여 부정수급 최종 결정

* e나라도움 부정수급 의심 유형
 → 가족간 거래(본인, 배우자, 자녀), 지출증빙 미비, 집행 오남용(동일 거래처 분할결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금지 업종 거래) 등

3 부정수금액 환수

- * 부정수급 확정액 + 제재부가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의거, 부정수급 확정액에 제재부가금 함께 부과
- *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나. 법 제33조의2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받은 경우: 500%
 -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예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부정수급 확정액이 1천만원일 경우, 제재부가금은 3천만원(1천만원 X 300%)이며 보조사업자가 최종 반납해야 할 금액은 4천만원(1천만원+3천만원)

4 활용사업 부정수급 실제 사례

| 유형 | 내용 |
|--------|--|
| 가족간 거래 | 단체 대표가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 |
| 가족간 거래 |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 거래내용 중 일부는 일반 타 업체보다 월등히 높음 |
| 가족간 거래 |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 업체만의 특수성을 소명하였으나 시중에서 구입 가능 |
| 가족간 거래 | 수행단체 대표자가 임원으로 등록된 업체와 거래 |
| 가족간 거래 |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 회계상 증빙 미비 |
| 집행 오남용 | 사업 목적 외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 구입 일상관리경비 성격의 환경 미화 인건비 집행 |
| 기타 | 행사 참가비 명목의 수익금을 승인을 받아 재집행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체 보관, 자산성 물품 구입 및 시설부대공사, 지역문화유산활용사업과 관계없는 기관(단체) 행사 경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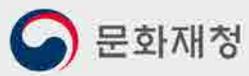
5 지출 불가 항목

- * 조명시설 설치 등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 상근직원 및 단순 사무보조 인건비(초과근무수당 포함)
-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일상적 환경미화 등 기관(단체) 운영비
- * 상근인력 사례비(강사료), 학술대회, 내부직원 대상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경비
- * **상품권**, 기념품, 답례품 등 행사지원경비(단, 일반인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제외하나, 경비 편성을 최소화하여야 함. 기관명의 기념품 제작 ×)

6 기타 유의사항

- * 유료프로그램 운영 시 수익금 참고사항
 - 1) 수익금 계좌 별도 개설
 - 2) 수익금은 반납 또는 사업목적에 맞는 재투자
 - 3) 정산보고서 제출 시, 발생액 및 처리내역 기재
- *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수의계약X
- * 증빙자료(예 : 재료비 등 물품구입·차량 및 장비 임차, 현수막 제작 시 증빙사진, 자료집·보고서 결과물, 인건비 지급관련 근무일지 또는 출석부 등), 비교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 * 인건비, 수당은 원천징수세액을 제하고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하고, 원천징수세 납부내역을 정산자료에 첨부.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 * 타 사업(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돌봄사업 등)과 혼용해서 집행하지 말것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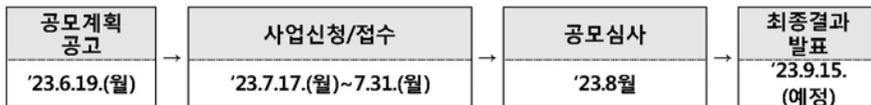


3. 2024년 생생문화유산 사업 공모계획

I 사업 개요 및 공모 내용

□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4년 생생 문화유산 사업
- 사업목적
 - '문화유산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라는 전략으로, 닫히고 잠자고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창조
- 사업기간 : 2024년 1월~ 12월
- 사업내용 : 문화유산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하여 활용한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원대상 : 지정유산(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명승, 시도자연유산, 무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비지정문화유산 제외)
 - ※ 향교서원 / 전통산사 / 고택종갓집 / 세계유산은 각각 해당 공모사업으로 신청
- 신청자격 :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자치단체 경상보조)
- 보조금 보조율 : 국비 40%, 지방비 60%
- 보조금 지원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제72조(경비부담)
- 공모 접수 및 심사 일정



- * 신청마감 : '23.7.31.(월) 18:00까지(※신청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 전자공문으로 접수하며, 용량이 과다한 첨부파일은 담당자 메일(kong9217@korea.kr)로 송부
- * 제출서류 : 서식1 ~ 3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은 8페이지 참고)

□ 사업유형 및 지원예산

| 구 분 | 시범육성형 | 집중육성형 | 지속발전형 |
|---------|--|---------|--------|
| 사업기간* | 1~2년차 | 3~5년차 | 6년차 이상 |
| 국비 지원금액 | 4천만원 이내 | 8천만원 이내 | 1억원 이내 |
| 추가지원** |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은 지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예산 추가 지원 (단, 신청금액 범위 내) | | |

* 최근 4년간('20년~'23년) 국비 미지원 년도가 있는 경우, **기 지원받은 사업기간 중 최대 3년까지만 인정**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1번 사업 | ○ | ○ | ○ | X | 4년차 |
| 2번 사업 | ○ | ○ | X | ○ | 4년차 |
| 3번 사업 | ○ | X | ○ | ○ | 4년차 |
| 4번 사업 | X | ○ | ○ | ○ | 4년차 |
| 5번 사업 | ○ | ○ | X | X | 3년차 |
| 6번 사업 | ○ | X | ○ | X | 3년차 |
| 7번 사업 | X | ○ | ○ | X | 3년차 |
| 8번 사업 | ○ | X | X | ○ | 3년차 |
| 9번 사업 | X | ○ | X | ○ | 3년차 |
| 10번 사업 | X | X | ○ | ○ | 3년차 |
| 11번 사업 | ○ | X | X | X | 2년차 |
| 12번 사업 | X | ○ | X | X | 2년차 |
| 13번 사업 | X | X | ○ | X | 2년차 |
| 14번 사업 | X | X | X | ○ | 2년차 |
| 15번 사업 | X | X | X | X | 1년차 |

** 추가지원 예시

- (예시1) 집중육성형 사업으로 신청금액은 6,000만원이고 심사에서 3,6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된 경우 ☞ 외국인 프로그램 운영 시 최대 360만원 추가하여 최종 3,960만원 지원
- (예시2) 지속발전형 사업으로 신청금액은 8,000만원이고 심사에서 75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된 경우 ☞ 외국인 프로그램 운영 시 최대 750만원 추가 가능하나, 최종 8,000만원 지원(신청금액 범위 내)

□ 사업요건

| | |
|------------------|--|
| 대상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과 연관된 유적·유물이나 이야기 등 내재적 가치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 ○ 문화유산의 특색을 살려 숙박형, 유입형, 연계형으로 구성된 특화된 프로그램 및 연중 지속적으로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수요도가 높은 사업 ○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향토문화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 제외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문화유산에 대하여 중복으로 신청하는 사업 * 예시) 1개의 시도(광역시)에서 A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사업을 2개 이상 신청 시 모두 탈락 ○ 지자체의 사업수행 의지가 낮은 사업 * 예시) 행정사항(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모니터링 진행, 월보 제출 등) 비협조 사업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 추진주체 간 마찰 발생사업 전문가 평가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전년도 지방비 확보 관련 문제 발생 사업 과년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미수납금이 있는 지자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집행점검에 불응하는 사업 ○ 주관단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 ○ 문화유산의 단순 공개 및 활용과 관계없는 관광위주 사업, 기존 축제 연계 사업 ○ 사업유형에 따른 성과 달성도가 낮은 사업 ○ 문화유산 의미와 원형 보존에 부정적 우려가 있는 사업 ○ 「문화재보호법」 등 제반 법령 및 회계질서를 위반하는 사업 ○ 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
| 가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1점) ○ 문화유산 활용사업 추진 전담조직(과, 팀, 계 등)을 설치한 지자체(1점) ○ 유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1점) ○ 둘 이상 지자체가 협업하여 시행하는 사업(1점) ○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1점) <p>* 둘 이상 지자체가 협업하여 시행하는 사업 : ① 둘 이상 지자체가 하나의 문화유산활용사업을 역할 분담하여 시행 또는 ② 둘 이상 지자체가 각자 문화유산활용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부 프로그램 중 일부를 동일 기간 또는 동일 장소에서 수행하는 경우 ※ ①, ② 모두 단순 답사프로그램은 가점 제외</p> <p>* 사회적 약자(장애인, 다문화가족, 새터민, 이주민, 65세이상 어르신,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연계 및 여행상품 기획운영, 지역주민/단체가 기획운영은 가점사항에서 우수사업 선정기준으로 변경</p> <p>* 가점 및 추가지원 예산 수령 후 미실시한 경우 다음연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에 감점(각 항목당 2점) 처리</p> |

□ 추가 지원사항 : ICT를 활용한 실감콘텐츠 개발 ['22년~]

- **지원내용**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 (예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확장현실(XR), 메타버스(Metaverse),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 미디어아트 등
- **대상사업** : 생생, 향교·서원, 전통산사,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야행 제외)
- **선정절차** : 4개 분야 사업 중 공모를 통해 선정
- **지원금액** : 건별 국비 1억원 이내
* 본 사업 금액과 별개로 신청하며, 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최종 지원금액 결정(본 사업이 '24년 사업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본 사업 신청 시 **별도 양식(서식3) 추가 제출**
- **보조율** : 국비 40% / 지방비 60%
- **지원요건**

| 구분 | 내 용 |
|------------------|---|
| 대상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문화유산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ICT기술을 선택하여 콘텐츠 구성 • '24년 9월까지 개발 완료 후 10월부터는 시범 운영 * '25년 사업 공모시, 해당 실감콘텐츠를 반드시 포함시켜 프로그램 구성 |
| 제한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비 및 자산취득 성격의 예산편성 불가 * (예시) 프로젝터 등 장비 취득(x), 임대(o) • 문화유산 원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 배제 • 해당 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특성이 결여된 콘텐츠 제외 |

II 사업 심사 및 선정

□ 시범육성형 심사기준

* 가점은 p.3 참조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판 단 기 준 |
|----------------|---------|--|
| 사업계획의 충실성 (30) | 계획의 적합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프로그램 시기, 수혜대상 적절성, 횟수, 예산 등) 해당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이해 및 기획의도는 적절한가? |
| | 콘텐츠 경쟁력 | 해당 문화유산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수혜대상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가?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적인가? |
| 사업운영 역량 (40) | 사업수행 역량 | 해당 지자체는 추진의지가 높은가? 수행단체는 추진역량(전문성, 인력)을 갖추었는가? 프로그램은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 | 사업관리 | 홍보의 타겟이나 추진노력은 적절한가?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방안은 갖추었는가?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은 적절한가?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는 적절한가? |
| 지속 가능성 (30) | 기대효과 | 프로그램은 문화유산 향유에 기여하는가? 프로그램은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가져오는가? |

□ 집중육성형, 지속발전형 심사기준

* 가점은 p.3 참조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판 단 기 준 |
|----------------|-----------|--|
| 사업계획의 충실성 (20) | 계획의 적합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프로그램 시기, 수혜대상 적절성, 횟수, 예산 등) 해당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이해 및 기획의도는 적절한가? |
| | 콘텐츠 경쟁력 | 해당 문화유산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수혜대상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가?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적인가? |
| 사업운영 역량 (35) | 사업수행 역량 | 해당 지자체는 추진의지가 높은가? 수행단체는 추진역량(전문성, 인력)을 갖추었는가? 프로그램은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 | 사업관리 | 홍보의 타겟이나 추진노력은 적절한가?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방안은 갖추었는가?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은 적절한가?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는 적절한가? |
| 지속 가능성 (45) | 기대효과 | 프로그램은 문화유산 향유에 기여하는가? 프로그램은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가져오는가? |
| | 모니터링 평가점수 | 최근 2개년 모니터링 점수 평균 등급화 |

□ ICT를 활용한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심사기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판 단 기 준 |
|------------------|----------|---|
| 기획역량 (30) | 콘텐츠의 경쟁력 | 콘텐츠의 창의성, 내용의 충실성, 콘텐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여부 |
| | 문화유산 연관성 | 사업의 이해도, 해당 문화유산의 내재적 의미와 가치가 드러나도록 문화유산 특성 반영 여부 |
| 사업추진체계 및 역량 (40) | 사업 추진체계 |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역할분담의 체계성과 협력도 |
| | 프로그램 운영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안전관리계획의 적절성 |
| 발전성 (30) | 활성화 기여도 | 지역 활성화 기여도, 콘텐츠 운영 지속 가능성 |

□ 심사일정 및 방법

- 심사일정 : '23. 8월 예정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 내·외부 전문가 5~10명 이내 구성,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서 등 종합 검토
 -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의 경우, 2차 PT심사 예정('23. 8월 중 / 일정 별도 통보)
- 결과발표 : '23. 9. 15. 예정 / 문화재청 홈페이지(새소식-공지사항) 등

□ 세부 추진일정

| | | |
|------------------------|-----------------------|---|
| 계획 공고 | '23.6.19.(월)~7.3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문 시행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공지 |
| ↓ | | |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23.7.17.(월)~7.3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신청(광역 지자체 수합 제출) 문화재청 공문 접수 |
| ↓ | | |
| 심사 | '23.8월 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1차 서류 심사(필수) 2차 심사는 필요 시 별도 시행 (실감콘텐츠는 2차 심사 실시) |
| ↓ | | |
| 최종 선정 결과 발표 및 보조금 사전통지 | '23.9.15. 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 사업 선정 결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공지 '24년 보조금 사전통지(문화재청→지자체) |
| ↓ | | |
| 보조금 확정 통지 | '23.12월 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 보조금 확정통지(문화재청→지자체) |
| ↓ | | |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24.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사업계획서 보완 및 보조금 교부신청 (문화재청) 사업지침 및 교부결정 통지 |
| ↓ | | |
| 사업 추진 (지자체) | '24.3~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사업 추진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반기 워크숍 및 사업 컨설팅 현장 모니터링 실시 사업 홍보 등 지원 |
| ↓ | | |
| 사업 평가 및 포상 | '24.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성과 우수사업 포상 (문화재청장 표창) 지역문화유산 활용 브랜드 사업 예비목록 선정 |

III 제출서류 및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 공모현황 총괄표(서식 1)
-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내역서 포함 / 서식 2)
- 실감콘텐츠 개발 추가지원 신청서(선택사항 / 서식 3)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 (광역) 공모현황 총괄표(서식 1)와 함께 소관 기초 지자체의 공모신청서 일체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 기한 엄수
- (기초) 공모신청서(서식 2) 작성 제출
 - * 사업별 개별 파일로 저장 제출 [파일명 형식 : "연번.광역 기초.문화유산명(1개)_사업명"] (예시) 1.서울 중랑구.망우 독립유공자 묘역_독립군이 보낸 한 장의 암호레터

□ 공모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자체 대상 공모로서 **민간 신청 불가**
- 사업비 산출내역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공모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문화재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사업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된 지자체는 우리 청이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취소 및 국비 전액 환수, 차년도 공모 시 페널티 적용
 - 사업 선정 후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대폭 변경하거나 사업규모가 공모 지원신청 및 심의 당시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될 경우
 - 문화재청 또는 광역 지자체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 문화재청이 '24년 생생 문화유산 사업 공모 선정을 확정·통지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지체없이 주관단체 선정 및 보조금 재교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유료 프로그램 운영 등 **가점/우대항목**이 포함되어 선정된 사업은 '24년도에 해당 프로그램을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함
- 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은 보조금법 및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사업관련 모든 홍보물 제작 시 '**문화재청**' 및 '**생생 문화유산 사업 BI**'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문화재청은 사업관리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며 선정된 지자체와 주관단체는 문화재청의 사업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매월 추진실적 및 일정계획 제출,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하여야 함
- 둘 이상 지자체가 협업하는 사업은 대표 지자체가 일괄하여 신청토록 함

□ 문의처 :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공병주 주무관(042-481-4747)

공모 신청서
- 2024년도 생생 문화유산 사업 -

| | | | | | | | | |
|--|---|-----------------|-----------------|------------|------------------|----|----|----|
| 사업명 | | | | | 사업 유형 | 시범 | 집중 | 지속 |
| 대상 문화유산 | ④ 문화유산 명칭(종별) 순으로 기재 * 예시: ○○○○(국가민속), ○○○○(도유형) ④ 3개 이내의 주요 문화유산만 기재 | | | | | | | |
| 사업비 (단위: 천원) | 계 | 국비 (40%) | 지방비(60%) | | 비 고 (자부담) | | | |
| | | | 광역 | 기초 | | | | |
| 세부 프로그램명 | ①(대표) ② ③ ④ ④ 4개 이내(대표프로그램 1개 포함) 프로그램의 '명칭'만 기재 | | | | | | | |
| 지자체 | 지자체명 | | | 부서명 | | | | |
| | 담당자 성명(직위) | | | 이메일 | | | | |
| | 담당자 연락처 | (사무실) | | (휴대폰) | | | | |
| 2023년 월 일 신청인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직인) | | | | | | | | |
| 문화재청장 귀하 | | | | | | | | |
| 첨부 : 사업계획서(안) 1부. 끝. | | | | | | | | |

2024년도 생생 문화유산 사업계획서(안)

1. 사업요약 및 가점(우대) 항목

| | | |
|---|---|---|
| 사업명 | | |
| 대상 문화유산 | ④ 문화유산 명칭(종별) 순으로 기재 * 예시 : ○○○○(국가민속), ○○○○(도유형) * 문화재청 홈페이지「문화유산정보 - 문화유산검색」에서 반드시 확인 | |
| 사업 개요 | ④ 사업의 개괄적인 내용을 간략히 작성(2~3줄 이내) | |
| 가점(우대) 항목 *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 | 구분 |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내용 |
| | ① 전년도 우수 | ○ 사업명 : |
| | ② 문화유산 활용 사업 추진 전담 조직 설치 지자체 | ○ 부서명(팀명) : ○ 구성인원 : |
| | ③ 유료 프로그램 운영 | ○ 유료 프로그램명 : ○ 참여대상 : ○ 기간(횟수) : ○ 유료화 항목 : 예시) 체험비, 참가비, 숙박비 등 ○ 유료 프로그램 운영 수입금 집행계획 : |
| | ④ 둘 이상 지자체가 협업하여 기획·운영 | ○ 프로그램명 : ○ 참여지자체 : ○ 참여내용 : ○ 기간(횟수) : |
| | ⑤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기획·운영 <신규> | ○ 프로그램명 : ○ 참여내용 : ○ 기간(횟수) : |
| 예산 추가지원 항목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 |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 ○ 구분 : 별도 프로그램 기획·운영/ 프로그램 일부 회차를 외국인 대상 운영 중 택1 ○ 프로그램명 : ○ 참여대상 : ○ 기간(횟수) : ○ 모객방법 : |

- * 사회적 약자연계 및 여행상품 기획·운영, 지역주민/단체가 기획·운영은 가점사항에서 우수사업 선정기준으로 변경
- * 가점 및 추가지원 예산 수령 후 미실시한 경우 다음연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에 감점(각 항목당 2점) 처리

2. 사업의 기획의도 ☞ 사업의 주제(컨셉), 특수성 등을 간략히 기재

-
-

3. 세부 프로그램 구성 ☞ 소수 프로그램(3개 내외)의 밀도 있는 운영 지향(세부 프로그램당 최대 1페이지 이내, 세부 프로그램별로 해당 문화유산의 의의, 가치와의 연관성을 기술할 것) ☞ 내부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편성 불가(직원 교육은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유산 활용 전문인력 교육' 활용 권고) ☞ 둘 이상 지자체의 협업 프로그램,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은 세부 프로그램명 옆에 "협업프로그램",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임을 명시할 것

① (대표)세부 프로그램명 :

- 기간 : '24년 ○월 ○일 ~ ○월 ○일(총○회)
- 장소 : ☞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특징(수용인원, 역사성이나 상징적 의미, 편의시설 및 교통 등 행사개최 여건 등)을 간략히 기재
- 참여대상 :
- 세부내용 : ☞ 프로그램 구성, 내용, 일정 등 기재. 코로나-19 대응체계 포함

② 세부 프로그램명 :

- 기간 : '24년 ○월 ○일 ~ ○월 ○일(총○회)
- 장소 :
- 참여대상 :
- 세부내용 :

③ 세부 프로그램명 :

- 기간 : '24년 ○월 ○일 ~ ○월 ○일(총○회)
- 장소 :
- 참여대상 :
- 세부내용 :

4. 사업 운영 및 관리계획

가. 사업시행방식 : 지자체 직접 추진/ 대행 추진 중 택 1

☞ 수행기관/단체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단체명을 명시할 수 있음

- * i)공모시점에서 수행기관이 명시된 경우, 활용사업 인건비를 24년 1월부터 인정
- ii)공모시점에서 수행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및 iii) 보조금 교부 신청 시, 공모시점의 수행기관이 변경된 경우, 인건비는 보조금 교부 시점부터 인정

나. 조직도(추진체계)

☞ 행사를 운영하는 조직의 추진체계를 알 수 있는 조직도를 이미지나 표 형태로 작성

다. 주요 운영인력(지자체, 수행기관, 그 외 협력기관의 주요 참여인력 현황)

| 기관 | 역할(담당 업무) | 인원수(명) | 비고 |
|----|-----------|--------|----|
| | | | |

* 기관 : 지자체, 수행기관/단체, 그 외 협력기관/단체 중 택 1

라. 안전관리대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문화재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p.85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양식 변경 가능)

마.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 또는/및 내용

- (프로그램 운영)
-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지역농수산물 이용 등
- (프로그램 내용)
- ☞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문화유산 강연·공연, 폐기물 업사이클링, 자연유산 모니터링, 문화유산 탐방과 관련된 플로깅, 그 외 친환경 농업활동 등

5.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관람객수, 관람객 만족도, 홍보효과, 일자리 창출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계량목표(예상) 기재

-

6. 사업 추진경과

(단위 : 천원)

| 연도 | 사업명 | 사업내용 | 소요예산 (국비지원액) | 재원 |
|----|-----|------|-----------------|----------|
| | | | | ex. 문화재청 |
| | | | | ex. 교육부 |

* 신청사업 또는 유사사업 최근 3년간 국비지원 실적 기재

7. 기타사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가. 최근 3년 간 개발한 체험키트 등 상품화 가능 콘텐츠 내역

| 연도 | 콘텐츠 품목 | 콘텐츠 세부내용 | 비고 |
|----|-------------|----------|----|
| | ex. 체험키트 | | |
| | ex. 여행 프로그램 | | |

나. 언론보도 ☞ 행사에 대한 호평 등 중점 보도내용이 있을 경우 최대 3건 이내 기재 (행사일정 등 단순 소개 보도는 제외)

| 보도일자 | 언론사 | 보도내용(기사명, 주요내용 등) | 비고 |
|------|-----|-------------------|----|
| | | | |
| | | | |

8. 예산편성 내역서

가.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 계 | 국비(40%) | 지방비(60%) | | 기타 (민간단체 자부담 등) |
|---|---------|----------|----|--------------------|
| | | 광역 | 기초 | |
| | | | | |

나. 예산편성 총괄표

(단위 : 천원)

| 목 | 세목 | 세부내용 | 산출내역 | | | 금액 | 비고 |
|----------------|-------------------------|--|------|-------|-------|----|----|
| | | | 단가 | 식/개/명 | 월/회/일 | | |
| 인건비 (110) | 일용임금 (04) | | | | | | |
| 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 (01) | | | | | | |
| | 공공요금 및 계세 (02) | | | | | | |
| | 임차료 (07) | | | | | | |
| | 재료비 (11) | | | | | | |
| ⋮ | | | | | |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 | | | | |
| 업무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 (01) | *사업 예산(국비, 지방비 합계)의 1% 이내 (1% 이내여도 1,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 |
| 계 | | | | | |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
(단,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는 편성 할 수 없음)

* 자료 작성 시 **【붙임】 2024년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예산지원 범위를 참조**

추가지원 신청서
- 20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

| | | | | | |
|--|---|-------------|-------------------|-------|----------------------------|
| 본 사업명 | | | | 사업 구분 | 생생, 향교·서원, 전통산사, 고택종가집 중 1 |
| 실감콘텐츠명 | | | | | |
| 대상문화유산 | * 문화유산 명칭(종별) 순으로 기재 예시: ○○○○(국가민속), ○○○○(도유형) 3개 이내의 주요 문화유산만 기재 | | | | |
| 사업비 (단위: 천원) | 계 | 국비 (40%) | 지방비(60%) | | 비고 (자부담) |
| | | | 광역 | 기초 | |
| 실감콘텐츠 세부내용 | ① 정보통신기술(ICT) 종류 | | | | |
| | ② 개발기간 | | ○월 ~ ○월(○개월) | | |
| | ③ 운영기간 및 횟수 | | ○월 ~ ○월(○개월)/ ○○회 | | |
| | ④ 운영장소 | | | | |
| | ⑤ 주제(컨셉) | | | | |
| | ○ | | | | |
| ⑥ 콘텐츠 내용(줄거리, 특성 등) 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자체 | 지자체명 | | 부서명 | | |
| | 담당자 성명(직위) | | 이메일 | | |
| | 담당자 연락처 | | (사무실) (휴대폰) | | |
| 2023년 월 일 신청인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직인) | | | | | |
| 문화재청장 귀하 | | | | | |
| 첨부 : 실감콘텐츠 개발 계획서(안) 1부. 끝. | | | | | |

20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실감콘텐츠 개발 계획서(안)

1. 본 사업명 :
2. 실감콘텐츠명 :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실감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필요성을 기재
 -
 -
4. 콘텐츠 주제[컨셉]
 - 가. 정보통신기술(ICT) 종류 :
 - 나. 콘텐츠 주제(컨셉) : ☞ 주제(컨셉), 기획의도, 차별성, 특수성 등을 기재
5. 콘텐츠 내용 및 관련 이미지
 - 가. 내용(줄거리, 특성 등) ☞ 콘텐츠의 내용, 줄거리, 특성 등을 핵심적으로 기재
 -
 -
 - 나. 관련 이미지 ☞ 현장 이미지, 유사 사례 이미지 등을 저용량으로 첨부

6. 개발 및 운영계획

가. 개발기간 : 2024년 ○월 ~ ○월(○개월)

나. 운영기간 및 횟수 : 2024년 ○월 ~ ○월(○개월)/ ○○회

다. 운영장소 :

라. 운영계획

-
-

☞ 모객방법(자유관람, 예약관람 등), 본 사업(세부 프로그램)과의 연계방법 등 세부사항 기재

7.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

☞ 해당 콘텐츠 체험 인원수, 관람객 만족도, 홍보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계량목표(예상) 기재

8. 그 밖의 참고사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

☞ 유사사업 실적, 기반구축 현황 등 심사 시 고려할만한 사항, 신청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참고자료(언론, 전문지 보도 등)가 있을 경우 작성(이미지는 저용량으로 첨부)

9. 예산편성내역서

가.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 계 | 국비(40%) | 지방비(60%) | | 기타 (민간단체 기부금 등) |
|---|---------|----------|----|--------------------|
| | | 광역 | 기초 | |
| | | | | |

나. 예산편성 총괄표

(단위 : 천원)

| 목 | 세목 | 세부내용 | 산출내역 | | | 금액 | 비고 |
|----------------|-------------------------|--|------|-------|-------|----|----|
| | | | 단가 | 식/개/명 | 월/회/일 | | |
| 인건비 (110) | 일용임금 (04) | | | | | | |
| 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 (01) | | | | | | |
| | 공공요금 및 계세 (02) | | | | | | |
| | 임차료 (07) | | | | | | |
| | 재료비 (11) | | | | | | |
| | ⋮ | | | | |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 | | | | |
| 업무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 (01) | *사업 예산(국비, 지방비 합계)의 1% 이내 (1% 이내여도 1,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 |
| 계 | | | | | |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
(단,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는 편성 할 수 없음)

* 예산지원 범위 등 기타사항은 【붙임】 2024년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예산지원 범위를 참조

[붙임]

2024년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예산지원 범위

1. 예산 지원내용

- 보조금 예산 편성은 다음의 법령, 훈령, 예규에 따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구분 | 내 용 | 지급범위 | 비 고 |
|-------|--|--|--------|
| 인건비 | 1.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 진행보조 - 사업총괄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 지자체별 사업 특성·여건 등에 따라 판단 | 별첨1 참고 |
| | 2. 보조원(일용직) * 1인 1일(평일 9:00~18:00/8시간) 기준으로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 |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 | |
| 운영비 | 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구 등) | 실 비 | |
| |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비 | | |
| | 3. 안내·홍보물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제작비 - 간판, 상패 등 제작비, 참여자 모집을 위한 문자, SNS 사용비 | 견적가 | |
| | 4. 의약품 구입비 : 관람객을 위해 구입하는 의약품 | 실 비 | |
| | 5. 프로그램 운영 관련 소모성 재료비 - 교구 및 교재 등 구입, 기념품 제작비, 복장비 등 | 실 비 | |
| | 6. 업무위탁대가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소규모 용역대가, 사례금 등 - 강사수당, 자문·지도 수당, 공연(출연) 수당, 원고료, 회계검증 | 지자체별 사업 특성·여건 등에 따라 판단 | 별첨1 참고 |
| | 7.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 실 비 | |
| | 8. 임차료 (버스임차료, 강의실 등 임차료, 시설임차료 등) | 실 비 | |
| 여비 | 1. 근무지내 출장(동일지역) | | |
| | 2. 근무지외 출장(타지역) ○ 일비, 식비/ 교통비(대중교통, 자가용 등)/ 숙박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 |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업무협의, 간담회 등의 경비 | 전체 예산의 1% 이내 (1% 이내에도 1,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별첨1>에 제시된 금액을 기준을 하되, 프로그램의 특성·여건 등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별 적정 대가기준 별도 수립 가능
- ※ <별첨1>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규정에 의거, 지자체별 사업특성·여건 등에 따라 자체 판단 적용
- ※ '24년부터 운영비 중 기획비 삭제 (보조사업 감사결과 반영)

2. 예산 편성 시 주의사항

- 사업비는 지역문화유산 활용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 인건비 과다 편성 지양(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 총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지자체 장의 승인을 얻어 편성)
 - 1인에게 지급되는 총 경비(인건비, 수당 등)가 당해 연도 인건비 상한액 기준 초과 시, 집행 불인정
- 숙박 프로그램 및 체험이나 답사 프로그램은 참가자 실비범위 내에서 가급적 유료화하여 필요경비 일부 증당 및 참가자 참여율 제고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해야하며, 포괄적으로 편성해서는 안 됨
 - 제작비, 예비비, 잡비, 일비 등 구체적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매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아야 함
- 재료비는 세부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만 인정 (노트북, 컴퓨터, 앰프 등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 회의 관련 경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사업의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진행보조(임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당해연도 최저임금(최저시급) 준수

※ 지출 불가 항목

- 조명시설 설치 등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및 단순 사무보조 인건비(초과근무수당 포함)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일상적 환경 미화 등 기관(단체) 운영비
- 상근인력 사례비(강사료), 학술대회, 내부직원 대상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경비
- 상품권, 기념품, 답례품 등 행사지원경비(단, 일반인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제외하나, 경비 편성을 최소화하여야 함)

(별첨 1)

가.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 진행보조 인건비

○ 사업 총괄 및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 구분 | 지급액 기준 | 비고 |
|----------|--|---|
| 총괄 책임자 | - 사업 총괄 책임을 맡은 인력으로 회계 사후관리 등 사업 총괄 책임자 (참여율 50% 기준) 2,681,226원/월 | * 자격기준은 문화유산 관련분야 또는 활용 및 관광 관련분야 전공 경력 등에 대하여 자체별 자체판단 *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가 강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해의 수당만 지급(중복지급 불가) |
| 사업 관리자 | - 사업추진 실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진행자 1,344,277원/월 (참여율 50% 기준) | * 지급액 기준은 '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임('24년 사업추진시 '24년 기준단가로 변경 적용) |
| 진행 보조 인력 | -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보조, 안전관리, 무대설치 등 사업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 인력 당해 최저임금 x 시간 | |

* 참여율은 당해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참여비율을 말하며, 타 사업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타 사업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으로, 1개월 100% 기준금액은 2를 곱해야 함

(예시) 총괄책임자가 참여율 20%로 2개월간 수행한 경우 (2,681,226원 x 2) x 20% x 2개월

* 인건비는 원천징수세액을 제하고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하고, 원천징수세 납부내역을 정산자료에 첨부

나. 자문·지도 수당

| 구분 | 내 용 | 단가(천원) | |
|----------|---|--------|-----|
| 자문·지도 수당 | 심사 및 자문료 - 문화유산 활용사업 관련 교육, 정책·운영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내부 참여인력은 지급불가) - 분임활동을 지도·평가하는 강사 등 | 1일당 | 100 |

*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또한,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다. 강사수당

| 구분 | 자격 기준 | 지급액(천원) | 비고 |
|----|---|----------|-----|
| 1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화재청(시도) 문화재위원 -대학교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 최초 1시간 | 300 |
| | | 초과 (시간당) | 150 |
| 2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문화재청(시도) 문화재전문위원 -대학교 관련학과 조교수 및 전임강사 | 최초 1시간 | 200 |
| | | 초과 (시간당) | 100 |
| 3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 | 최초 1시간 | 150 |
| | | 초과 (시간당) | 70 |
| 4급 | -1급~3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초 1시간 | 100 |
| | | 초과 (시간당) | 40 |

라. 공연 및 출연수당

| 구분 | 자격 기준 | 지급액(천원) | 비고 |
|----|--|---------|-----|
| 1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공립예술단체 예술감독 -대학교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 1시간 | 550 |
| 2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국공립예술단체 악장, 지도위원 -대학교 관련학과 조교수 및 전임강사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 1시간 | 450 |
| 3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 -국공립예술단체 단원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 1시간 | 350 |
| 4급 | -1급~3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시간 | 250 |

※ 동 기준에 의거 단가를 산정하되, 공연 난이도, 지명도, 공연 규모,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음.

마. 원 고 료

| 구 분 | 지 급 기 준 | 비 고 |
|-------------|--|--|
| 지급단가 | 12,000원 / A4용지 1면 | (지급 규격)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 지급한도 (기준면수) | 1) 강의 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2)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
|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 |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 |
| 원고지 |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 |
| 수정원고 등 | 1)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수정시 : 전체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원고의 50%지급 - 30% 미만 수정시 : 미지급 2)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 미지급 | ※ 다만 교육시기 및 대상, 교육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 지급가능 |

바. 작곡료 및 편곡료

| 구분 | 내 용 | 지급액 (천원) |
|-----|--|----------|
| 편 곡 | 1 등급 - 국내·외 국립 국악 및 교향악단 급 이상의 공연 또는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5년 이상 있는 자 - 문화유산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 경력 15년 이상인 자 | 500 |
| | 2 등급 - 국내 시·구립 국악 또는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있는 10년 이상 있는 자 - 문화유산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경력 10년 이상인 자 | 400 |
| | 3 등급 - 국내 음악관련 대학, 민간 국악공연,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 문화유산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경력 5년 이상인 자 | 300 |
| 작 곡 | -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가능 | |
| 감수료 | - 감수료는 등급 무관 | 50 |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인 경우, 원 편곡의 ½만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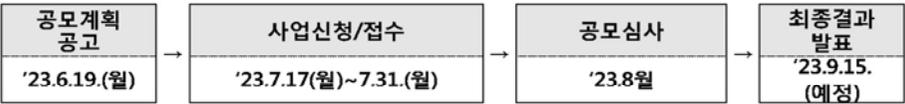
*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까지 지급 가능

**4. 2024년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계획**

I 사업 개요 및 공모 내용

□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4년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 사업목적
 - 향교·서원에 담긴 정신 문화의 본래 가치와 진정성을 계승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창조
 - 향교·서원 문화유산을 지역 사회의 대표 문화유산 활용 자원으로 육성하여 지립적·지속적 활용체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2024년 1 ~ 12월
- 사업내용 : 향교·서원 문화유산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활용한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원대상 : 지정유산(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명승, 시도자연유산, 무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비지정문화유산 제외)
 - ※ 세계유산은 해당 공모사업으로 신청
- 신청자격 :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자치단체 경상보조)
- 보조금 보조율 : 국비 40%, 지방비 60%
- 보조금 지원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제72조(경비부담)
- 공모 접수 및 심사 일정



- * 신청마감 : '23.7.31.(월) 18:00까지(※신청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 전자공문으로 접수하며, 용량이 과다한 첨부파일은 담당자 메일(kong9217@korea.kr)로 송부
- * 제출서류 : 서식1 ~ 3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은 8페이지 참고)

□ 사업유형 및 지원예산

| 구 분 | 시범육성형 | 집중육성형 | 지속발전형 |
|---------|--|---------|--------|
| 사업기간* | 1~2년차 | 3~5년차 | 6년차 이상 |
| 국비 지원금액 | 4천만원 이내 | 8천만원 이내 | 1억원 이내 |
| 추가지원** |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은 지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예산 추가 지원 (단, 신청금액 범위 내) | | |

* 최근 4년간('20년~'23년) 국비 미지원 년도가 있는 경우, **기 지원받은 사업기간 중 최대 3년까지만 인정**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1번 사업 | ○ | ○ | ○ | X | 4년차 |
| 2번 사업 | ○ | ○ | X | ○ | 4년차 |
| 3번 사업 | ○ | X | ○ | ○ | 4년차 |
| 4번 사업 | X | ○ | ○ | ○ | 4년차 |
| 5번 사업 | ○ | ○ | X | X | 3년차 |
| 6번 사업 | ○ | X | ○ | X | 3년차 |
| 7번 사업 | X | ○ | ○ | X | 3년차 |
| 8번 사업 | ○ | X | X | ○ | 3년차 |
| 9번 사업 | X | ○ | X | ○ | 3년차 |
| 10번 사업 | X | X | ○ | ○ | 3년차 |
| 11번 사업 | ○ | X | X | X | 2년차 |
| 12번 사업 | X | ○ | X | X | 2년차 |
| 13번 사업 | X | X | ○ | X | 2년차 |
| 14번 사업 | X | X | X | ○ | 2년차 |
| 15번 사업 | X | X | X | X | 1년차 |

** 추가지원 예시

- (예시1) 집중육성형 사업으로 신청금액은 6,000만원이고 심사에서 3,6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된 경우 ¹³⁵ 외국인 프로그램 운영 시 최대 360만원 추가 하여 최종 3,960만원 지원
- (예시2) 지속발전형 사업으로 신청금액은 8,000만원이고 심사에서 75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된 경우 ¹³⁶ 외국인 프로그램 운영 시 최대 750만원 추가 가능하나, 최종 8,000만원 지원(신청금액 범위 내)

□ 사업요건

| | |
|----------|---|
| 대상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교·서원 문화유산과 연관된 유적·유물이나 이야기 등 내재적 가치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 ○ 향교·서원문화유산의 특색을 살려 숙박형, 유입형, 연계형으로 구성된 특화된 프로그램 및 연중 지속적으로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수요도가 높은 사업 ○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향토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 제외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문화유산에 대하여 중복으로 신청하는 사업 * 예시) 1개의 시도(광역시)에서 A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사업을 2개 이상 신청 시 모두 탈락 ○ 지자체의 사업수행 의지가 낮은 사업 * 예시) 행정사항(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모니터링 진행, 월보 제출 등) 비협조 사업 부적정한 예산집행 등 추진주체 간 마찰 발생사업 전문가 평가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전년도 지방비 확보 관련 문제 발생 사업 과년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미수납금이 있는 지자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집행점검에 불응하는 사업 ○ 주관단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 ○ 문화유산의 단순 공개 및 활용과 관계없는 관광위주 사업, 기존 축제 연계 사업 ○ 사업유형에 따른 성과 달성도가 낮은 사업 ○ 사업 대상 지역 외 원거리 지역 답사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사업 ○ 문화유산 의미와 원형보존에 부정적 우려가 있는 사업 ○ 「문화재보호법」등 제반 법령 및 회계질서를 위반하는 사업 ○ 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
| 가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1점) ○ 문화유산 활용사업 추진 전담조직(과, 팀, 계 등)을 설치한 지자체(1점) ○ 유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1점) ○ 둘 이상 지자체가 협업하여 시행하는 사업(1점) ○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1점) * 둘 이상 지자체가 협업하여 시행하는 사업 : ①둘 이상 지자체가 하나의 문화유산활용사업을 역할 분담하여 시행 또는 ②둘 이상 지자체가 각자 문화유산활용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부 프로그램 중 일부를 동일 기간 또는 동일 장소에서 수행하는 경우 ※ ①, ② 모두 단순 답사프로그램은 가점 제외 * 사회적 약자(장애인, 다문화가족, 새터민, 이주민, 65세이상 어르신,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연계 및 여행상품 기획운영, 지역주민/단체가 기획운영은 가점사항에서 우수사업 선정기준으로 변경 * 가점 및 추가지원 예산 수령 후 미실시한 경우 다음연도 지역문화유산 활용 사업에 감점(각 항목당 2점) 처리 |

□ 추가 지원사항 : ICT를 활용한 실감콘텐츠 개발 ['22년~]

- **지원내용**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 (예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확장현실(XR), 메타버스(Metaverse),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 미디어아트 등
- **대상사업** : 생생, **향교·서원**, 전통산사,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야행 제외)
- **선정절차** : 4개 분야 사업 중 공모를 통해 선정
- **지원금액** : 건별 **국비 1억원 이내**
* 본 사업 금액과 별개로 신청하며, 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최종 지원금액 결정(본 사업이 '24년 사업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본 사업 신청 시 **별도 양식(서식3) 추가 제출**
- **보조율** : 국비 40% / 지방비 60%
- **지원요건**

| 구분 | 내용 |
|----------|---|
| 대상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문화유산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ICT기술을 선택하여 콘텐츠 구성 • '24년 9월까지 개발 완료 후 10월부터는 시범 운영 * '25년 사업 공모시, 해당 실감콘텐츠를 반드시 포함시켜 프로그램 구성 |
| 제한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비 및 자산취득 성격의 예산편성 불가 * (예시) 프로젝터 등 장비 취득(x), 임대(o) • 문화유산 원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 배제 • 해당 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특성이 결여된 콘텐츠 제외 |

II 사업 심사 및 선정

□ 시범육성형 심사기준

* 가점은 p.3 참조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판 단 기 준 |
|----------------|---------|--|
| 사업계획의 충실성 (30) | 계획의 적합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프로그램 시기, 수혜대상 적절성, 횡수, 예산 등) 해당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이해 및 기획의도는 적절한가? |
| | 콘텐츠 경쟁력 | 해당 문화유산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수혜대상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가?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적인가? |
| 사업운영 역량 (40) | 사업수행 역량 | 해당 지자체는 추진의지가 높은가? 수행단체는 추진역량(전문성, 인력)을 갖추었는가? 프로그램은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 | 사업관리 | 홍보의 타겟이나 추진노력은 적절한가?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방안은 갖추었는가?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은 적절한가?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는 적절한가? |
| 지속 가능성 (30) | 기대효과 | 프로그램은 문화유산 향유에 기여하는가? 프로그램은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가져오는가? |

□ 집중육성형, 지속발전형 심사기준

* 가점은 p.3 참조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판 단 기 준 |
|----------------|-----------|--|
| 사업계획의 충실성 (20) | 계획의 적합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프로그램 시기, 수혜대상 적절성, 횡수, 예산 등) 해당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이해 및 기획의도는 적절한가? |
| | 콘텐츠 경쟁력 | 해당 문화유산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수혜대상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가?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적인가? |
| 사업운영 역량 (35) | 사업수행 역량 | 해당 지자체는 추진의지가 높은가? 수행단체는 추진역량(전문성, 인력)을 갖추었는가? 프로그램은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 | 사업관리 | 홍보의 타겟이나 추진노력은 적절한가?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방안은 갖추었는가?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은 적절한가?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는 적절한가? |
| 지속 가능성 (45) | 기대효과 | 프로그램은 문화유산 향유에 기여하는가? 프로그램은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가져오는가? |
| | 모니터링 평가점수 | 최근 2개년 모니터링 점수 평균 등급화 |

□ ICT를 활용한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심사기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판 단 기 준 |
|------------------|----------|---|
| 기획역량 (30) | 콘텐츠의 경쟁력 | 콘텐츠의 창의성, 내용의 충실성, 콘텐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여부 |
| | 문화유산 연관성 | 사업의 이해도, 해당 문화유산의 내재적 의미와 가치가 드러나도록 문화유산 특성 반영 여부 |
| 사업추진체계 및 역량 (40) | 사업 추진체계 |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역할분담의 체계성과 협력도 |
| | 프로그램 운영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안전관리계획의 적절성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포함) |
| 발전성 (30) | 활성화 기여도 | 지역 활성화 기여도, 콘텐츠 운영 지속 가능성 |

□ 심사일정 및 방법

○ 심사일정 : '23. 8월 예정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내·외부 전문가 5~10명 이내 구성,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서 등 종합 검토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의 경우, 2차 PT심사 예정('23. 8월 중 / 일정 별도 통보)

○ 결과발표 : '23. 9. 15. 예정 / 문화재청 홈페이지(새소식-공지사항)

□ 세부 추진일정

| | | |
|------------------------|-----------------------|---|
| 계획 공고 | '23.6.19.(월)~7.3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문 시행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공지 |
| ↓ | | |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23.7.17.(월)~7.3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신청(광역 지자체 수합 제출) 문화재청 공문 접수 |
| ↓ | | |
| 심사 | '23.8월 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1차 서류 심사(필수) 2차 심사는 필요 시 별도 시행 (실감콘텐츠는 2차 심사 실시) |
| ↓ | | |
| 최종 선정 결과 발표 및 보조금 사전통지 | '23.9.15. 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 사업 선정 결과 발표 -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공지 '24년 보조금 사전통지(문화재청→지자체) |
| ↓ | | |
| 보조금 확정 통지 | '23.12월 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 보조금 확정통지(문화재청→지자체) |
| ↓ | | |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24.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사업계획서 보완 및 보조금 교부신청 (문화재청) 사업지침 및 교부결정 통지 |
| ↓ | | |
| 사업 추진 (지자체) | '24.3~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사업 추진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반기 워크숍 및 사업 컨설팅 -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사업 홍보 등 지원 |
| ↓ | | |
| 사업 평가 및 포상 | '24.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성과 우수사업 포상 (문화재청장 표창) 지역문화유산 활용 브랜드 사업 예비목록 선정 |

III 제출서류 및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 공모현황 총괄표(서식 1)
-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내역서 포함 / 서식 2)
- 실감콘텐츠 개발 추가지원 신청서(선택사항 / 서식 3)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 (광역) 공모현황 총괄표(서식 1)와 함께 소관 기초 지자체의 공모신청서 일체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기한 엄수
- (기초) 공모신청서(서식 2) 작성 제출
 - * 사업별 개별 파일로 저장 제출 [파일명 형식: "연번.광역 기초.문화유산명(1개).사업명"] (예시) 1.전남 강진군.강진향교.품생품사 강진향교

□ 공모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자체 대상 공모로서 **민간 신청 불가**
- 사업비 산출내역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공모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문화재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사업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된 지자체는 우리 청이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취소 및 국비 전액 환수, 차년도 공모 시 패널티 적용**
 - 사업 선정 후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대폭 변경하거나 사업규모가 공모 지원신청 및 심의 당시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될 경우
 - 문화재청 또는 광역 지자체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 문화재청이 '24년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 선정을 확정·통지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지체없이 주관단체 선정 및 보조금 재교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유료 프로그램 운영 등 **가점/우대항목**이 포함되어 선정된 사업은 '24년도에 해당 프로그램을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함
- 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은 보조금법 및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사업관련 모든 홍보물 제작 시 '**문화재청**' 및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BI**'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문화재청은 사업관리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며 선정된 지자체와 주관단체는 문화재청의 사업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매월 추진실적 및 일정계획 제출,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하여야 함
- 둘 이상 지자체가 협업하는 사업은 대표 지자체가 일괄하여 신청토록 함

□ 문의처 :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공병주 주무관[042-481-4747]

공모 신청서
- 2024년도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

| | | | | | | | | |
|--|---|-----------------|-----------------|-----------|-----------------|----|----|----|
| 사업명 | | | | | 사업유형 | 시범 | 집중 | 지속 |
| 대상 문화유산 | ① 문화유산 명칭(종별) 순으로 기재 * 예시: ○○○○(국가민속), ○○○○(도유형) ② 3개 이내의 주요 문화유산만 기재 | | | | | | | |
| 사업비 (단위: 천원) | 계 | 국비 (40%) | 지방비(60%) | | 비고 (자부담) | | | |
| | | | 광역 | 기초 | | | | |
| 세부 프로그램명 | ①(대표) ② ③ ④ ⑤ 4개 이내(대표프로그램 1개 포함) 프로그램의 '명칭'만 기재 | | | | | | | |
| 지자체 | 지자체명 | | 부서명 | | | | | |
| | 담당자 성명(직위) | | 이메일 | | | | | |
| | 담당자 연락처 | (사무실) | | (휴대폰) | | | | |
| 2023년 월 일 신청인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직인) | | | | | | | | |
| 문화재청장 귀하 | | | | | | | | |
| 첨부 : 사업계획서(안) 1부. 끝. | | | | | | | | |

2024년도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 사업계획서(안)

1. 사업요약 및 가점(우대) 항목

| | | |
|---|---|---|
| 사업명 | | |
| 대상 문화유산 | ① 문화유산 명칭(종별) 순으로 기재 * 예시 : ○○○○(국가민속), ○○○○(도유형) * 문화재청 홈페이지「문화유산정보 - 문화유산검색」에서 반드시 확인 | |
| 사업 개요 | ② 사업의 개괄적인 내용을 간략히 작성(2~3줄 이내) | |
| 가점(우대) 항목 *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 | 구분 |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내용 |
| | ① 전년도 우수 | ○ 사업명 : |
| | ② 문화유산 활용 사업 추진 전담 조직 설치 지자체 | ○ 부서명(팀명) : ○ 구성인원 : |
| | ③ 유료 프로그램 운영 | ○ 유료 프로그램명 : ○ 참여대상 : ○ 기간(횟수) : ○ 유료화 항목 : 예시) 체험비, 참가비, 숙박비 등 ○ 유료 프로그램 운영 수입금 집행계획 : |
| | ④ 둘 이상 지자체가 협업하여 기획·운영 | ○ 프로그램명 : ○ 참여지자체 : ○ 참여내용 : ○ 기간(횟수) : |
| ⑤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기획·운영 <신규> | ○ 프로그램명 : ○ 참여내용 : ○ 기간(횟수) : | |
| 예산 추가지원 항목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 | ○ 구분 : 별도 프로그램 기획·운영/ 프로그램 일부 회차를 외국인 대상 운영 중 택1 ○ 프로그램명 : ○ 참여대상 : ○ 기간(횟수) : ○ 모객방법 : | |

- * 사회적 약자연계 및 여행상품 기획운영, 지역주민/단체가 기획운영은 가점사항에서 우수사업 선정기준으로 변경
- * 가점 및 추가지원 예산 수령 후 미실시한 경우 다음연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에 감점(각 항목당 2점) 처리

2. 사업의 기획의도 ☞ 사업의 주제(컨셉), 특수성 등을 간략히 기재

-
-

3. 세부 프로그램 구성 ☞ 소수 프로그램(3개 내외)의 밀도 있는 운영 지향(세부 프로그램당 최대 1페이지 이내, 세부 프로그램별로 해당 문화유산의 의의, 가치와의 연관성을 기술할 것) ☞ 내부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편성 불가(직원 교육은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유산 활용 전문인력 교육' 활용 권고) ☞ 둘 이상 지자체의 협업 프로그램,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은 세부 프로그램명 옆에 "협업프로그램",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임을 명시할 것

① (대표)세부 프로그램명 :

- 기 간 : '24년 ○월 ○일 ~ ○월 ○일(총○회)
- 장 소 : ☞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특징(수용인원, 역사성이나 상징적 의미, 편의시설 및 교통 등 행사개최 여건 등)을 간략히 기재
- 참여대상 :
- 세부내용 : ☞ 프로그램 구성, 내용, 일정 등 기재. 코로나-19 대응체계 포함

② 세부 프로그램명 :

- 기 간 : '24년 ○월 ○일 ~ ○월 ○일(총○회)
- 장 소 :
- 참여대상 :
- 세부내용 :

③ 세부 프로그램명 :

- 기 간 : '24년 ○월 ○일 ~ ○월 ○일(총○회)
- 장 소 :
- 참여대상 :
- 세부내용 :

4. 사업 운영 및 관리계획

가. 사업시행방식 : 지자체 직접 추진/ 대행 추진 중 택 1

- ☞ 수행기관/단체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단체명"을 명시할 수 있음
 - * i)공모시점에서 수행기관이 명시된 경우, 활용사업 인건비를 24년 1월부터 인정
 - ii)공모시점에서 수행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및 iii) 보조금 교부 신청 시, 공모시점의 수행기관이 변경된 경우, 인건비는 보조금 교부 시점부터 인정

나. 조직도(추진체계)

- ☞ 행사를 운영하는 조직의 추진체계를 알 수 있는 조직도를 이미지나 표 형태로 작성

다. 주요 운영인력(지자체, 수행기관, 그 외 협력기관의 주요 참여인력 현황)

| 기관 | 역할(담당 업무) | 인원수(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 기관 : 지자체, 수행기관/단체, 그 외 협력기관/단체 중 택 1

라. 안전관리대책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문화재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p.85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양식 변경 가능)

마.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 또는/및 내용

- (프로그램 운영)
 -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지역농수산물 이용 등
- (프로그램 내용)
 - ☞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문화유산 강연·공연, 폐기물 업사이클링, 자연유산 모니터링, 문화유산 탐방과 관련된 플로깅, 그 외 친환경 농업활동 등

5.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 관람객수, 관람객 만족도, 홍보효과, 일자리 창출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계량목표(예상) 기재**
-

6. 사업 추진경과

(단위 : 천원)

| 연도 | 사업명 | 사업내용 | 소요예산 (국비지원액) | 재원 |
|----|-----|------|-----------------|----------|
| | | | | ex. 문화재청 |
| | | | | ex. 교육부 |

* 신청사업 또는 유사사업 최근 3년간 국비지원 실적 기재

7. 기타사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가. 최근 3년 간 개발한 체험키트 등 상품화 가능 콘텐츠 내역

| 연도 | 콘텐츠 품목 | 콘텐츠 세부내용 | 비고 |
|----|-------------|----------|----|
| | ex. 체험키트 | | |
| | ex. 여행 프로그램 | | |

나. 언론보도 ☞ 행사에 대한 호평 등 중점 보도내용이 있을 경우 최대 3건 이내 기재 (행사일정 등 단순 소개 보도는 제외)

| 보도일자 | 언론사 | 보도내용(기사명, 주요내용 등) | 비고 |
|------|-----|-------------------|----|
| | | | |
| | | | |

8. 예산편성 내역서

가.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 계 | 국비(40%) | 지방비(60%) | | 기타 (민간단체 자부담 등) |
|---|---------|----------|----|--------------------|
| | | 광역 | 기초 | |
| | | | | |

나. 예산편성 총괄표

(단위 : 천원)

| 목 | 세목 | 세부내용 | 산출내역 | | | 금액 | 비고 |
|----------------|-------------------------|--|------|-------|-------|----|----|
| | | | 단가 | 식/개/명 | 월/회/일 | | |
| 인건비 (110) | 일용임금 (04) | | | | | | |
| 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 (01) | | | | | | |
| | 공공요금 및 계세 (02) | | | | | | |
| | 임차료 (07) | | | | | | |
| | 재료비 (11) | | | | | | |
| ⋮ | | | | | |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 | | | | |
| 업무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 (01) | *사업 예산(국비, 지방비 합계)의 1% 이내 (1% 이내여도 1,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 |
| 계 | | | | | |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
(단,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는 편성 할 수 없음)

* 자료 작성 시 **【붙임】 2024년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예산지원 범위를 참조**

추가지원 신청서
- 20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

| | | | | | |
|--|---|-------------|-------------------|-------|----------------------------|
| 본 사업명 | | | | 사업 구분 | 생생, 향교·서원, 전통산사, 고택종가집 중 1 |
| 실감콘텐츠명 | | | | | |
| 대상문화유산 | * 문화유산 명칭(종별) 순으로 기재 예시: ○○○○(국가민속), ○○○○(도유형) 3개 이내의 주요 문화유산만 기재 | | | | |
| 사업비 (단위: 천원) | 계 | 국비 (40%) | 지방비(60%) | | 비고 (자부담) |
| | | | 광역 | 기초 | |
| 실감콘텐츠 세부내용 | ① 정보통신기술(ICT) 종류 | | | | |
| | ② 개발기간 | | ○월 ~ ○월(○개월) | | |
| | ③ 운영기간 및 횟수 | | ○월 ~ ○월(○개월)/ ○○회 | | |
| | ④ 운영장소 | | | | |
| | ⑤ 주제(컨셉) | | | | |
| | ○ | | | | |
| ⑥ 콘텐츠 내용(줄거리, 특성 등) 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자체 | 지자체명 | | 부서명 | | |
| | 담당자 성명(직위) | | 이메일 | | |
| | 담당자 연락처 | | (사무실) (휴대폰) | | |
| 2023년 월 일 신청인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직인) | | | | | |
| 문화재청장 귀하 | | | | | |
| 첨부 : 실감콘텐츠 개발 계획서(안) 1부. 끝. | | | | | |

20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실감콘텐츠 개발 계획서(안)

1. 본 사업명 :
2. 실감콘텐츠명 :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실감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필요성을 기재
 -
 -
4. 콘텐츠 주제[컨셉]
 - 가. 정보통신기술(ICT) 종류 :
 - 나. 콘텐츠 주제(컨셉) : ☞ 주제(컨셉), 기획의도, 차별성, 특수성 등을 기재
5. 콘텐츠 내용 및 관련 이미지
 - 가. 내용(줄거리, 특성 등) ☞ 콘텐츠의 내용, 줄거리, 특성 등을 핵심적으로 기재
 -
 -
 - 나. 관련 이미지 ☞ 현장 이미지, 유사 사례 이미지 등을 저용량으로 첨부

6. 개발 및 운영계획

가. 개발기간 : 2024년 ○월 ~ ○월(○개월)

나. 운영기간 및 횟수 : 2024년 ○월 ~ ○월(○개월)/ ○○회

다. 운영장소 :

라. 운영계획

-
-

☞ 모객방법(자유관람, 예약관람 등), 본 사업(세부 프로그램)과의 연계방법 등 세부사항 기재

7.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

☞ 해당 콘텐츠 체험 인원수, 관람객 만족도, 홍보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계량목표(예상) 기재

8. 그 밖의 참고사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

☞ 유사사업 실적, 기반구축 현황 등 심사 시 고려할만한 사항, 신청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참고자료(언론, 전문지 보도 등)가 있을 경우 작성(이미지는 저용량으로 첨부)

9. 예산편성내역서

가.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 계 | 국비(40%) | 지방비(60%) | | 기타 (민간단체 기부금 등) |
|---|---------|----------|----|--------------------|
| | | 광역 | 기초 | |
| | | | | |

나. 예산편성 총괄표

(단위 : 천원)

| 목 | 세목 | 세부내용 | 산출내역 | | | 금액 | 비고 |
|----------------|----------------------|--|------|-------|-------|----|----|
| | | | 단가 | 식/개/명 | 월/회/일 | | |
| 인건비 (110) | 일용임금 (04) | | | | | | |
| 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 (01) | | | | | | |
| | 공공요금 및 제세 (02) | | | | | | |
| | 임차료 (07) | | | | | | |
| | 재료비 (11) | | | | | | |
| | ⋮ | | | | |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 | | | | |
| 업무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 (01) | *사업 예산(국비, 지방비 합계)의 1% 이내 (1% 이내에도 1,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 |
| 계 | | | | | |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
(단,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는 편성 할 수 없음)

* 예산지원 범위 등 기타사항은 【붙임】 2024년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예산지원 범위를 참조

[붙임]

2024년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예산지원 범위

1. 예산 지원내용

- 보조금 예산 편성은 다음의 법령, 훈령, 예규에 따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구분 | 내 용 | 지급범위 | 비 고 |
|-------|--|--|--------|
| 인건비 | 1.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 진행보조 - 사업총괄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 지자체별 사업 특성·여건 등에 따라 판단 | 별첨1 참고 |
| | 2. 보조원(일용직) * 1인 1일(평일 9:00~18:00/8시간) 기준으로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 |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 | |
| 운영비 | 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구 등) | 실 비 | |
| |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비 | 견적가 | |
| | 3. 안내·홍보물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제작비 - 간판, 상패 등 제작비, 참여자 모집을 위한 문자, SNS 사용비 | | |
| | 4. 의약품 구입비 : 관람객을 위해 구입하는 의약품 | 실 비 | |
| | 5. 프로그램 운영 관련 소모성 재료비 - 교구 및 교재 등 구입, 기념품 제작비, 복장비 등 | 실 비 | |
| | 6. 업무위탁대가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소규모 용역대가, 사례금 등 - 강사수당, 자문·지도 수당, 공연(출연) 수당, 원고료, 회계검증 | 지자체별 사업 특성·여건 등에 따라 판단 | 별첨1 참고 |
| | 7.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 실 비 | |
| | 8. 임차료 (버스임차료, 강의실 등 임차료, 시설임차료 등) | 실 비 | |
| 여비 | 1. 근무지내 출장(동일지역) |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 |
| | 2. 근무지외 출장(타지역) ○ 일비, 식비/ 교통비(대중교통, 자가용 등)/ 숙박비 | | |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업무협의, 간담회 등의 경비 | 전체 예산의 1% 이내 (1% 이내에도 1,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별첨1>에 제시된 금액을 기준을 하되, 프로그램의 특성·여건 등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별 적정 대가기준 별도 수립 가능
- ※ <별첨1>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규정에 의거, 지자체별 사업특성·여건 등에 따라 자체 판단 적용
- ※ '24년부터 운영비 중 기획비 삭제 (보조사업 감사결과 반영)

2. 예산 편성 시 주의사항

- 사업비는 지역문화유산 활용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 인건비 과다 편성 지양(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 총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지자체 장의 승인을 얻어 편성)
 - 1인에게 지급되는 총 경비(인건비, 수당 등)가 당해 연도 인건비 상한액 기준 초과 시, 집행 불인정
- 숙박 프로그램 및 체험이나 답사 프로그램은 참가자 실비범위 내에서 가급적 유료화하여 필요경비 일부 증당 및 참가자 참여율 제고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해야하며, 포괄적으로 편성해서는 안 됨
 - 제작비, 예비비, 잡비, 일비 등 구체적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매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아야 함
- 재료비는 세부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만 인정 (노트북, 컴퓨터, 앰프 등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 회의 관련 경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사업의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진행보조(임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당해연도 최저임금(최저시급) 준수

※ 지출 불가 항목

- 조명시설 설치 등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및 단순 사무보조 인건비(초과근무수당 포함)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일상적 환경 미화 등 기관(단체) 운영비
- 상근인력 사례비(강사료), 학술대회, 내부직원 대상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경비
- 상품권, 기념품, 답례품 등 행사지원경비(단, 일반인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제외하나, 경비 편성을 최소화하여야 함)

(별첨 1)

가.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 진행보조 인건비

○ 사업 총괄 및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 구분 | 지급액 기준 | 비고 |
|----------|--|---|
| 총괄 책임자 | - 사업 총괄 책임을 맡은 인력으로 회계 사후관리 등 사업 총괄 책임자 (참여율 50% 기준) 2,681,226원/월 | * 자격기준은 문화유산 관련분야 또는 활용 및 관광 관련분야 전공 경력 등에 대하여 지자체별 자체판단 *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가 강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하나의 수당만 지급(중복지급 불가) |
| 사업 관리자 | - 사업추진 실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진행자 1,344,277원/월 (참여율 50% 기준) | * 지급액 기준은 '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임('24년 사업추진시 '24년 기준단가로 변경 적용) |
| 진행 보조 인력 | -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보조, 안전관리, 무대설치 등 사업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 인력 당해 최저임금×시간 | |

* 참여율은 당해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참여비율을 말하며, 타 사업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타 사업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으로, 1개월 100% 기준금액은 2를 곱해야 함

(예시) 총괄책임자가 참여율 20%로 2개월간 수행한 경우 (2,681,226원×2) × 20% × 2개월

* 인건비는 원천징수세액을 제하고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하고, 원천징수세 납부내역을 정산자료에 첨부

나. 자문·지도 수당

| 구분 | 내 용 | 단가(천원) | |
|---------|---|--------|-----|
| 자문지도 수당 | - 문화유산 활용사업 관련 교육, 정책·운영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내부 참여인력은 지급불가) - 분임활동을 지도·평가하는 강사 등 | 1일당 | 100 |

*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또한,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다. 강사수당

| 구분 | 자격 기준 | 지급액(천원) | | 비고 | |
|----|---|---|----------|----------|--|
| 1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화재청(시도) 문화재위원 -대학교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 -전·현직 차관(급) 이상 -대기업총수(회장), 국영기업체 사장 | 최초 1시간 | 300 | |
| | | | 초과 (시간당) | 150 | |
| 2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문화재청(시도) 문화재전문위원 -대학교 관련학과 조교수 및 전임강사 | -문화예술분야 강사 자격증 소지자 로서 강의 경력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 최초 1시간 | 200 | |
| | | | | 초과 (시간당) | |
| 3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 | -문화예술분야 강사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최초 1시간 | 150 | |
| | | | | 초과 (시간당) | |
| 4급 | -1급~3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급~3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초 1시간 | 100 | |
| | | | | 초과 (시간당) | |

라. 공연 및 출연수당

| 구분 | 자격 기준 | 지급액(천원) | | 비고 |
|----|--|---------|-----|---|
| 1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공립예술단체 예술감독 -대학교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 1시간 | 550 | 30분 이상일 경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50%만 지급 |
| 2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국공립예술단체 악장, 지도위원 -대학교 관련학과 조교수 및 전임강사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 1시간 | 450 | |
| 3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 -국공립예술단체 단원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 1시간 | 350 | |
| 4급 | -1급~3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시간 | 250 | |

※ 동 기준에 의거 단가를 산정하되, 공연 난이도, 지명도, 공연 규모,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음.

마. 원 고 료

| 구 분 | 지 급 기 준 | 비 고 |
|-------------|--|--|
| 지급단가 | 12,000원 / A4용지 1면 | (지급 규격)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 지급한도 (기준면수) | 1) 강의 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2)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
|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 |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 |
| 원고지 |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 |
| 수정원고 등 | 1)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수정시 : 전체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원고의 50%지급 - 30% 미만 수정시 : 미지급 2)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 미지급 | ※ 다만 교육시기 및 대상, 교육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 지급가능 |

바. 작곡료 및 편곡료

| 구분 | 내 용 | 지급액 (천원) |
|-----|--|----------|
| 편 곡 | 1 등급 - 국내·외 국립 국악 및 교향악단 급 이상의 공연 또는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5년 이상 있는 자 - 문화유산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 경력 15년 이상인 자 | 500 |
| | 2 등급 - 국내 시·구립 국악 또는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있는 10년 이상 있는 자 - 문화유산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경력 10년 이상인 자 | 400 |
| | 3 등급 - 국내 음악관련 대학, 민간 국악공연,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 문화유산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경력 5년 이상인 자 | 300 |
| 작 곡 | -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가능 | |
| 감수료 | - 감수료는 등급 무관 | 50 |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인 경우, 원 편곡의 ½만 지급

*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까지 지급 가능

**5. 2024년 문화유산
야행사업 공모계획**

I 공모 요강

□ 사업 개요 및 공모 내용

- 사업명 : 2024년 문화유산 야행(夜行)사업
- 사업목적
 - 문화유산 집적지역을 거점으로 야간에 특화된 문화유산 향유·체험 콘텐츠 육성·지원을 통한 문화유산 가치 확산
 -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제공을 통한 지역 관광자원 다양화로 지역의 문화·관광·경제 활성화에 동력 부여
- 사업내용 : 문화유산 집적지역을 거점으로 문화유산과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활용한 관람, 체험, 공연, 전시 등 야간 특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문화유산 야행 사업추진 기본방향 >

- 거점(핵심) 문화유산 중심으로 지역 역사·문화·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구현
 - 문화유산 야간개방과 인근 문화자원(박물관, 미술관 등) 연계 야간방문 프로그램
 - 전통 문화역사놀이·숙식·특산품 체험 프로그램, 무형문화유산 공연·시연 프로그램
- 8夜 콘텐츠 간 유기적·종합적 연계한 야간특화 네트워킹 프로그램 구현
- ('24년) 사업운영 시 기후변화 대응 사업계획 필수 반영: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지역농수산물 이용 등 탄소저감 및 행사폐기물 감축 계획 등

< 문화유산 야행 콘텐츠 구성도 >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공모대상 : 광역 및 기초 지자체(경상보조 / 국비 40%, 지방비 60%)
 - 보조금 지원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제72조(경비부담)

○ 공모 접수 및 심사 일정

| | | | |
|--------------|-----------------------|---------|---------------|
| 공모계획공고 | 사업신청/접수 | 공모심사 | 최종결과발표 |
| '23.6.19.(월) | '23.7.17.(월)~7.31.(월) | '23. 8월 | '23.9.15.(예정) |

- * 신청마감 : '23.7.31.(월) 18:00까지(※신청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 전자공문으로 접수하며, 용량이 방대한 파일은 압축(pdf 파일 전환 등)하여 송부
- * 제출서류 : 서식1~2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은 6페이지 참고)

□ 사업유형별 지원예산

| 사업유형 요건 | 표준형 및 네트워크형 | 시범형(마을공동체형) |
|-------------|---|---|
| 문화유산 집중도 | · 문화유산 집중도 높음 ·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의 밀집도가 높고 도보 이동 가능 · 문화유산 집중도 보통 · 다수의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의 위치가 다소 분산되어 도보 이동은 어려우나 연계 가능 | · 문화유산 집중도 낮음 ·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의 밀집도는 낮으나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 보유 |
| 사업규모 | · 대도시, 중소도시, 네트워크 · 대규모 집적 가능형 | · 마을 중심형 소도시 · 소규모 상설 가능형 |
| 8夜 구성 | · 5夜 ~ 8夜 | · 3夜 이상 |
| 상권연계 | · 메인거리 등 사업 대상지 내 상권이 집중화된 지역 · 근거리의 인접지역 시장 등과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지역 | · 주변 상권과의 연계 가능성은 낮으나 마을 공동체 및 지역의 청년 창업가 참여 유도 등 대체 방안 제시 가능지역 (지역주민 참여도가 높은 지역) |
| 지원금액 | 국비 5억원 이내 | 국비 2억원 이내 |

□ 공모 제외대상

- (문화유산 활용 무관) 단순공개행사, 관광위주의 축제, 지역축제 포함·연계 사업
- (법령위반) 문화재보호법, 보조금법 등 관련법령 위반 또는 문화유산 의미와 원형보존에 부정적 영향 우려 사업, 타 국가기관 지원중복, 보조사업자 중복수급 등
- (기타) 사찰에서 개최되거나 사찰이 포함된 지역의 문화유산 야간행사 등

II 사업 심사 및 선정

□ 표준형 및 네트워크형 심사기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기준 |
|-----------------------------|------------------------------------|---|
| 문화유산 야행 특성화 콘텐츠 (40점) | 문화유산 정체성 반영 정도 | ·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 (사업 개념, 목적, 방향, 내용의 적합성 등) · 사업의 주제가 지역 문화유산의 정체성 반영 여부 · 콘텐츠의 적절성(이동형, 야간형, 체류형, 해설-체험형) |
| | 대표 문화유산 활용 기획력 | · 대표 문화유산을 선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의 활용 여부 · 대표 문화유산에 대한 해설/답사/야경 프로그램의 필수 구성 여부 |
| | 인근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과의 연계성 | · 대상 문화유산 전체 활용 여부 · 인근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의 개방 여부 ·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 간 연계 프로그램 구성 여부 |
| 사업운영체계 (40점) | 사업수행조직 사업추진역량 | · 사업담당 조직구성의 체계성 · 전담조직의 사업 전문성 정도 · 사업참여 조직간 역할 분담의 적절성 |
|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 지역 상권과 연계한 협의체 구성 및 추진 여부 · 지역주민, 예술가, 문화기획자 등과의 협력적 추진 정도 |
| | 사업관리 역량 | · 홍보계획의 구체성 및 적극성 · 문화유산 보존방안이나 대응체계의 적절성 · 사업장소의 안전관리 방안의 적절성 · 안전사고 및 감염병 대응 등 사업 안전관리 방안의 적절성 |
| 지속발전 가능성 (20점) | 지역문화 활성화 기여도 자체평가 계획 및 환류 | · 본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 · 문화유산 및 개발된 콘텐츠의 지역 문화자원으로의 가능성 · 자체평가 수립·실행 계획의 체계성 · (해당사업) 전년도 컨설팅 의견 반영 노력 및 개선도 |

□ 시범형(마을공동체형) 심사기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기준 |
|-----------------------------|-------------------|--|
| 문화유산 야행 특성화 콘텐츠 (40점) | 문화유산 정체성 반영 정도 | ·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 (사업 개념, 목적, 방향, 내용의 적합성 등) · 사업의 주제가 지역 문화유산의 정체성 반영 여부 |
| | 대표 문화유산 활용 기획력 | · 대표 문화유산을 선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의 활용 여부 · 대표 문화유산에 대한 해설/답사/야경 프로그램의 필수 구성 여부 · 콘텐츠 개발 노력(이동형, 야간형, 체류형, 해설-체험형) |
| 사업운영체계 (50점) | 사업수행조직 사업추진역량 | · 사업담당 조직구성의 체계성 · 전담조직의 사업 전문성 정도 · 사업참여 조직간 역할 분담의 적절성 |
|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 지역주민의 사업과정 전반에의 주체적 참여 정도 · 지역 예술가, 문화기획자 등과의 협력적 추진 정도 |
| | 사업관리 역량 | · 홍보계획의 구체성 및 적극성 · 문화유산 보존방안이나 대응체계의 적절성 · 사업장소의 안전관리 방안의 적절성 · 안전사고 및 감염병 대응 등 사업 안전관리 방안의 적절성 |
| 지속발전 가능성 (10점) | 지역문화 활성화 기여도 | · 본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 · 문화유산 및 개발된 콘텐츠의 지역 문화자원으로의 가능성 |

□ 가점 항목 안내 및 유의 사항

-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기획, 운영(1점)
 -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문화유산 강연·공연, 자연유산 모니터링, 문화유산 탐방 관련 플로깅, 그 외 친환경 농업활동 등
 - 탄소발자국 감축, 행사폐기물 저감 등 친환경 프로그램으로 운영
- 둘 이상 지자체가 협업하여 시행하는 사업(1점)

둘 이상 지자체가 협업하여 시행하는 사업 : ①둘 이상 지자체가 하나의 문화유산활용사업을 역할 분담하여 시행 또는 ②둘 이상 지자체가 각자 문화유산활용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부 프로그램 중 일부를 동일 기간 또는 동일 장소에서 수행하는 경우 ※ ①, ② 모두 단순 답사프로그램은 가점 제외

○ 유의사항

- 가점 수령 후 미실시한 경우 다음연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에 감점(각 항목당 2점 이상) 처리

□ 심사일정 및 방법

- 심사일정 : 2023. 8월 예정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 내외부 전문가 5~10명 이내 구성 세부 지원규모는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사업 유형별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 검토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예정
- 결과발표 : 2023. 9. 15. 예정 / 문화재청 홈페이지(새소식-공지사항)

□ 세부 추진일정

| | | |
|------------------------|-----------------------|---|
| 사업 공고 | '23.6.19.(월)~7.3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문 시행(문화재청→광역 지자체)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공지 |
| ↓ | | |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23.7.17.(월)~7.3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신청(광역 지자체 총괄 제출) 문화재청 공문 접수(광역→문화재청) |
| ↓ | | |
| 심사(1차, 2차) | '23. 8월 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1차 서류 심사(필수) 2차 심사는 필요 시 별도 시행 |
| ↓ | | |
| 최종 선정 결과 발표 및 보조금 사전통지 | '23.9.15. 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년 사업 선정 결과 발표 -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공지 23년 보조금 사전통지(문화재청→지자체) |
| ↓ | | |
| 보조금 확정 통지 | '23.12월 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년 보조금 확정통지(문화재청→지자체) |
| ↓ | | |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24.1~2월 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사업계획서 보완 및 보조금 교부신청 (문화재청) 사업지침 및 교부결정 통지 |
| ↓ | | |
| 사업 추진 (지자체) | ~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사업 추진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반기 워크숍 및 사업 컨설팅 - 현장 모니터링 실시 |
| ↓ | | |
| 사업 평가 및 포상 | '24. 12월 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성과 우수사업 포상(문화재청장 표창) 「지역문화유산 활용 브랜드 사업」 예비 목록 선정 |

* 「지역문화유산 활용 브랜드 사업」 예비목록 : 기존의 우수사업을 대신하여

- ① 다수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통합된 지역 문화유산 활용(대표유산형)
- ② 지역사회 기반 및 주민 친화형 문화유산 활용(지역밀착형)
- ③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우수콘텐츠형) 등 대내외 인지도가 높은 사업을 문화재청이 인증, 브랜드화 지원

III 제출서류 및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 공모현황 총괄표(서식 1)
-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내역서 포함 / 서식 2)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 (광역) 공모현황 총괄표(서식 1)와 함께 소관 기초 지자체의 공모 신청서 일체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 기한 엄수**
- (기초) 공모신청서(서식 2) 작성 제출
 - * 사업별 개별 파일로 저장 제출 [파일명 형식 : 연번.광역 기초_사업명]
 - (예시) 1.서울 중구_정동야행

□ 공모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문화유산 야행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으로 민간단체 직접공모 불가**
- 총 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산출내역이 불명확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내용은 **장소의 역사성과 시대적인 테마를 명확하게 설정한 후** 테마를 반영한 대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되, **문화유산을 활용·강조**하고 문화유산과의 스토리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 사찰이 포함된 문화유산 야간행사, 단순 문화유산 공개 및 야간행사, 기존 축제와 연계하거나 문화유산 활용과 무관한 사업 공모 제외(1차 서류심사 시 탈락)
- 본 사업 공모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문화재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공모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된 지자체는 우리 청이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취소 및 국비 전액 환수, 차년도 공모 시 패널티가 적용됨

- ① 사업 선정 후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대폭 변경하거나 사업 규모가 공모 지원신청 및 심의 당시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된 경우
- ② 문화재청 또는 광역 지자체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 문화재청이 2024년 문화유산 야행사업 공모 선정을 확정·통지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주관단체 선정 및 보조금 재교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아래 관계법령*에 유의하여 필요 시 **현상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등

○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유료 프로그램 운영 등 가점/우대항목이 포함되어 선정된 사업은 2024년도에 해당 프로그램을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함

○ 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은 보조금법 및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사업관련 모든 **홍보물 제작 시 ‘문화재청’ 및 ‘문화유산 야행사업 BI’** 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개막식 및 행사 진행 시 리플릿 등 홍보물에 문화유산 야행사업의 취지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임을 알리는 안내멘트나 홍보 문구 반드시 기입

○ 문화재청은 사업관리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며 선정된 지자체와 주관단체는 문화재청의 **사업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매월 추진실적 및 일정계획 제출,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둘 이상 지자체가 협업하는 사업은 대표 지자체가 일괄하여 신청토록 함

□ **문의처 :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이재우 주무관(042-481-4744)**

2024년 문화유산 야행사업 공모현황 (총괄표)

| 연번 | 시도 | 시군구 | 사업유형 | 2024년 사업 연차 (1,2,3 등 순차 기재) | 사업 대상 문화유산 (사업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문화유산만 기재) | | 사업관련 문화시설 (사업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시설만 기재) | 2024년 사업내용 | | | | | 2024년 신청예산(천원) | | | 가정사항 (민간보조 사업자) | 기타사항 | | | | | 2024년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 개최 예정 (축제명, 개최일정 표기) | 비고 (수행기관 /단체명) |
|------|----|-----|------|-----------------------------|---|--|---|------------|-------------------|--|-----------------------|--|----------------|---------------|-------------|-----------------|------------------------------|-------------------------------|------------------------------------|------------------|------------------------|---|----------------|
| | | | | | 국가지정 | 시도지정 | | 사업명(부제) | 테마 및 주제 | 사업기간(행사 개최일차) | 주 사업(행사) 장소 | 주요프로그램 (8아발로 구분 작성) | 국비(A) (40%) | 지방비 (B) (60%) | 합계(C) (A+B) | | 불 이상 지자체가 협업 (O, X 기재) |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기획, 운영 (프로그램 개요) | 여행상품 (코레일, 버스 등 해당사항 기재) (O, X 기재) | 사업시행 방식 (직접, 보조) | 개방시설 야간운영 설치 (O, X 기재) | | |
| (예시) | 서울 | 중구 | 표준형 | 3 | 덕수궁(사적124호) 구리시야공사관(사적253호) 경흥제일교회(사적256호) 경희궁지(사적271호) 이화여고심슨기념관(등록문화재 35호) 태평로 구 국회의사당(등록문화재 11호) 구 대법원청사(등록문화재 237호) 경안궁 영아재(등록문화재 267호) 신아말보사발관(등록문화재 402호) | 청궁회서울성당(유형문화재 35호) 미곡공사관(유형문화재 132호) 해제회당동관(기념물 16호) 구세군중앙회관(기념물 20호) | 서울역사박물관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이화박물관 구세군역사박물관 신문박물관 인국공용사박물관 고려병유지업 덕수궁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조선일보미술관 신한결러리 일민미술관 경동극장 유관순기념관 세실극장 경향아트홀 순화동전(한일책박물관) | 전통 야행(가?) | 근대 교육과 회교의 중심, 영동 | ○ 월 2회 / 각 2일(총4일) ~ 5.11(금)~5.12(토) 18:00~23:00 - 10.12(금)~10.13(토) 18:00~23:00 | 덕수궁 돌담길 등 중구 청동 일대 | 1. (야회) : 5개 프로그램 - 이화 꽃을 피우다(이화박물관 미디어 파사드) - 경동 외교관가의 연회, 전통연회 - 경동의 고저낙향을 담은 향사초롱길 - 돌담 아래에서 즐기는 휴식과 낭만, 주경야후 - 정동의 밤을 밝힌 근대 전깃불 2. (야교) : 4개 프로그램 - 다같이 돌지 걸돌 한바퀴 / 분내관의 재미있는 전통 이야기 - 문화관광해설사가 들려주는 문화재 이야기 - 스탬프 투어, 중구 스토리 여행 APP 3. (야상) : 11개 프로그램 - 덕수궁 고궁음악회 / 명사조성 인문학 특강 - 중영한 월드뮤직 콘서트 / 풍류야 놀아보자 - 화동콘서트 / 정동극장 불마당 - 피아프오르간 연주회 / 영아재 이야기 콘서트 - 구세군악대 브라스밴드 연주회 / 돌담길 거리공연 - 불림의 뮤지엄 콘서트 "명화속 음악산책" 4. (야상) : 4개 프로그램 - 근대 휴식 패레이드, 정동야연 / 돌담길 거리공연 - 전통학당에 나타난 학동들 퍼포먼스 - 근대음악의 표상, 이현결러 피아노 5. (야식, 야사) : 1개 프로그램 - 푸드코트 / 한집마루 / 예술장터 | 320,000 | 480,000 | 800,000 | * | ○ (문화유산 집현정 프로그램 개요/내용 요약 등) | ○ | ○ 또는 보조 (공모 등 사업자 선정방식 기재) | ○ (지역축제 개최기간 명시) | 30만명 | ○서울중구○문화축제(10.1~3) ○서울중구○불꽃축제(9.1~3) | |

(서식 2) 공모신청서

| <h2 style="margin: 0;">공모 신청서</h2> <p style="margin: 0;">- 2024년 문화유산 야행사업 -</p> | | | | | |
|--|--|-----------------|------------------------|----------------|---------------------|
| 사업명 (부제명) | | | 사업 유형 | 표준형 및 네트워크형 | 시범형 |
| 대상 문화유산 | ☞ 문화유산 명칭(종별) 순으로 기재 * 예시: ○○○○(국가민속), ○○○○(도유형) ☞ 3개 이내의 주요 문화유산만 기재 | | | | |
| 주변 문화시설 | *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대사관, 체험장 등 기재 | | | | |
| 사업비 (단위 : 천원) | 계 | 국 비(40%) | 지방비(60%) | | 비 고 (자부담) |
| | | | 광역 | 기초 | |
| 사업 시행기간 | 2024년 월 일(요일) ~ 월 일(요일) 시간대 * 야행 실제 개최 기간 기재 | | 사업장소 | | |
| 세부 프로그램명 | ①(야경) ②(야로) ③(야설) ④(야사) ⑤(야화) ⑥(야시) ⑦(야식) ⑧(야숙) ☞ 8야 항목별로 구분하여 세부프로그램별로 기재 | | | | |
| 지 자 체 | 지자체명 | | 부서명 | | |
| | 담당자 성명 (직위) | | 이메일 | | |
| | 담당자 연락처 | (사무실) | (휴대폰) | | |
| 2023년 월 일 신청인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직인) <h3 style="margin: 0;">문화재청장 귀하</h3> | | | | | |
| 첨부 : 사업계획서(안) 1부. 끝. | | | | | |

사 업 계 획 서(요약본)

| 순번 | 유형 | 대 상 문화유산 | 행 사 명 | 주 요 내 용 | 일 시 | 장 소 | 참여대상 | 참여인원 | 숙박/유료 | 협업 여부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1) 유 형 : 8야(야경, 야로, 야설, 야사, 야화, 야시, 야식, 야숙) 항목별로 기재
- 2) 대상문화유산 : 프로그램과 연관된 문화유산의 명칭 기재
- 3) 행 사 명 :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 4) 주요내용 :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히 요약 기재
- 5) 일시/장소 : 프로그램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일자(요일), 횟수, 시간 및 장소 기재
- 6) 참여대상 : 일반인, ○○시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구체적으로 기재
- 7) 참여인원 :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수
- 8) 숙박/유료·무료 : 당일 프로그램인 경우(비숙박), 숙박 프로그램인 경우 (숙박 / 1박 2일 또는 2박 3일 등) 이라고 기재
유료 프로그램인 경우 유료, 무료 프로그램인 경우 무료라고 기재
- 9) 협업 여부 : ① 둘 이상 지자체가 하나의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역할 분담하여 시행 또는 ② 둘 이상 지자체가 각자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부 프로그램 중 일부를 동일 기간 또는 동일 장소에서 수행하는 경우
※ ①, ② 모두 단순 답사프로그램은 가점 제외

2024년도 문화유산 야행 사업계획서(안)

1. 사업명 :

2. 사업목적

- ☞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기술
-
-

3. 사업개요

가.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 현황 * 문화유산 야행사업과 연관된 내용만 작성

○ 총괄표 (단위 : 개소 수)

| 구분 | 공공기관 | 대사관 | 문화유산 | 박물관 | 미술관 | 종교시설 | 공연장 | 계 |
|------|------|-----|------|-----|-----|------|-----|---|
| 대상시설 | | | | | | | | |
| 참여시설 | | | | | | | | |

○ 대상 문화유산 : 총 점

| 연번 | 문화유산명칭 | 지정종목 | 지정번호 |
|----|--------|------|------|
| | | | |
| | | | |
| | | | |

○ 문화시설 : 총 개소

| 연번 | 구분 | 시설명 | 비고 |
|----|----|-----|----|
| | | | |
| | | | |

※ 구분 : 시설개방 현황 중에서 선택 기입(공공기관, 대사관, 문화유산, 박물관, 미술관 등)

나. 사업일시

(1차) 2024년 월 일(요일) ~ 월 일(요일) 시간대(18:00~24:00)

(2차) 2024년 월 일(요일) ~ 월 일(요일) 시간대(18:00~24:00)

다. 사업장소 :

라. 사업시행방식 : 지자체 직접 추진 / 대행 추진 중 택 1

- ☞ 공모시점에서 수행기관/단체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단체명을 명시할 수 있음
- * i) 공모시점에서 수행기관이 명시된 경우, 활용사업 인건비를 23년 1월부터 인정
- ii) 공모시점에서 수행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및 iii) 보조금 교부 신청 시, 공모시점의 수행기관이 변경된 경우, 인건비는 보조금 교부 시점부터 인정

마. 목표 관람객 수 : 만명

바. 사업예산 : 총 천원(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4. 세부 프로그램 구성내용

- * 문화유산, 주변의 문화시설 등 연계한 야간개방 및 문화공연 등 개최계획, 진행방법, 주요프로그램 내용 등을 작성. 세부 프로그램당 최대 1페이지 이내.
- * 둘 이상 지자체의 협업 프로그램은 세부내용에 "협업프로그램"임을 명시할 것

가. (야경) 세부 프로그램명 :

- 기 간 : '23년 월 일(요일) ~ 월 일(요일) (총 회 / 시간대)
- 장 소 :
- 참여대상 :
- 추진방향 : ☞ 세부사업의 필요성, 발상 및 의도, 전략, 기대효과 등 기재
- 주요내용 :

나. (야로) 세부 프로그램명 :

- 기 간 : '23년 월 일(요일) ~ 월 일(요일) (총 회 / 시간대)
- 장 소 :
- 참여대상 :
- 추진방향 : ☞ 세부사업의 필요성, 발상 및 의도, 전략, 기대효과 등 기재
- 주요내용 :

다. (야설) 세부 프로그램명 :

- 기 간 : 2024년 월 일(요일) ~ 월 일(요일) (총 회 / 시간대)
- 장 소 :
- 참여대상 :
- 추진방향 : 세부사업의 필요성, 발상 및 의도, 전략, 기대효과 등 기재
- 주요내용 :

라. (야사) 세부 프로그램명 :

- 기 간 : 2024년 월 일(요일) ~ 월 일(요일) (총 회 / 시간대)
- 장 소 :
- 참여대상 :
- 추진방향 : 세부사업의 필요성, 발상 및 의도, 전략, 기대효과 등 기재
- 주요내용 :

마. (야화) 세부 프로그램명 :

- 기 간 : 2024년 월 일(요일) ~ 월 일(요일) (총 회 / 시간대)
- 장 소 :
- 참여대상 :
- 추진방향 : 세부사업의 필요성, 발상 및 의도, 전략, 기대효과 등 기재
- 주요내용 :

바. (야시) 세부 프로그램명 :

- 기 간 : 2024년 월 일(요일) ~ 월 일(요일) (총 회 / 시간대)
- 장 소 :
- 참여대상 :
- 추진방향 : 세부사업의 필요성, 발상 및 의도, 전략, 기대효과 등 기재
- 주요내용 :

사. (야식) 세부 프로그램명 :

- 기 간 : 2024년 월 일(요일) ~ 월 일(요일) (총 회 / 시간대)
- 장 소 :
- 참여대상 :
- 추진방향 : 세부사업의 필요성, 발상 및 의도, 전략, 기대효과 등 기재
- 주요내용 :

아. (야숙) 세부 프로그램명 :

- 기 간 : 2024년 월 일(요일) ~ 월 일(요일) (총 회 / 시간대)
- 장 소 :
- 참여대상 :
- 추진방향 : 세부사업의 필요성, 발상 및 의도, 전략, 기대효과 등 기재
- 주요내용 :

5. 사업장소의 특성 및 위치도 (야행프로그램 구간도면 첨부)

○ (특징)

- ☞ 사업 장소의 역사성, 공간적 특성, 상징적 의미, 스토리텔링 등 장소 선정 사유 기술
-
-

○ (사업대상지 거리, 주변여건 등)

- ☞ 사업대상지 면적·거리, 편의시설 등 행사개최 요건과 주차장, 교통 등 주변여건 기술
-
-



※ 문화유산 야행 프로그램이 개최되는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구역 도면 첨부 (사업대상지, 중심거리, 문화시설, 문화유산 등 포함, 도보시간 및 거리 km 표기)

6. 사업 운영 및 관리계획

가. 조직도(추진체계)

☞ 행사를 운영하는 조직의 추진체계를 알 수 있는 조직도를 이미지나 표 형태로 작성



나. 주요 운영인력(문화시설 등 협업단체의 주요 참여인력 현황)

| 기관 | 역할(담당 업무) | 인원수(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기관 : 지자체, 주관단체, 협력단체 중 택 1

다. 참여기관 연계 및 협업체계

○

라. 해설사 및 안내요원 운영

○

마. 교통통제 및 연계

○

바. 숙박업소 등과 연계

○

7. 안전관리 대책(우천 및 돌발상황, 관람객 밀집, 감염병 대응 등)

- ☞ (야외 행사) 우천 대비 및 관람객 밀집 대비, 차량 통제 등 안전에 대비한 계획을 기술
- ☞ (실내 행사) 행사장 소방안전점검 결과, 비상 시 대피로 등 안전 확보와 관련된 계획 기술
- ☞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

○

8.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 또는/및 내용

○ (프로그램 운영)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지역농수산물 이용 등

○ (프로그램 내용)

☞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문화유산 강연·공연, 폐기물 업사이클링, 자연유산 모니터링, 문화유산 탐방과 관련된 플로깅, 그 외 친환경 농업활동 등

9.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관람객 집객방법 및 집객인원 수, 관람객 만족도, 프로그램 진행 홍보,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편익 등

○

○

10. 사업경과

(단위 : 천원)

| 연도 | 사업명 | 사업내용 | 기간 | 소요예산 (국비지원액) | 재원 |
|----|-----|------|----|-----------------|-------------|
| | | | | | ex. 문화재청 |
| | | | | | ex. 문화체육관광부 |

* 신청사업 또는 유사사업 최근 3년간(2020~2022) 국비지원, 수행 실적 기재

11. 매년 격년·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지역 대표 축제·행사

| 행사명 | 행사내용 | 개최시기 | 개최장소 | 주관부서(기관) |
|-----|------|------|------|----------|
| | | | | |
| | | | | |

12. 야간조명 설치 현황

| 연번 | 개최장소 (문화유산명 또는 문화시설) | 야간조명 설치여부(○,×) | 야간조명이 없는 경우 설치계획 |
|----|-------------------------|-------------------|---------------------|
| 1 | | | |
| 2 | | | |
| 3 | | | |

13. 그 밖의 참고사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가. 최근 3년 간 개발한 체험키트 등 상품화 가능 콘텐츠 내역

| 연도 | 콘텐츠 품목 | 콘텐츠 세부내용 | 비고 |
|----|-------------|----------|----|
| | ex. 체험키트 | | |
| | ex. 여행 프로그램 | | |

나. 언론보도 내용 ☞ 행사에 대한 호평 등 중점 보도내용이 있을 경우 최대 3건 이내 기재 (행사일정 등 단순 소개 보도는 제외)

| 보도일자 | 언론사 | 보도내용(기사명, 주요내용 등) | 비고 |
|------|-----|-------------------|----|
| | | | |
| | | | |

14. 예산편성 내역서

가. 예산개요

(단위 : 천원)

| 계 | 국비(40%) | 지방비(60%) | | 기타 (민간단체 자부담 등) |
|---|---------|----------|----|--------------------|
| | | 광역 | 기초 | |
| | | | | |

나. 예산편성(총괄표)

(단위 : 천원)

| 목 | 세목 | 세부내용 | 산출내역 | | | 금액 | 비고 |
|----------------|----------------------|--|------|-------|-------|----|----|
| | | | 단가 | 식/개/명 | 월/회/일 | | |
| 인건비 (110) | 임용임금 (04) | | | | | | |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 (01) | | | | | | |
| | 중공요금 및 계세 (02) | | | | | | |
| | 임차료 (07) | | | | | | |
| | ... | | | | |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 | | | | |
| 업무추진비 (240) | 사업추진 비(01) | *사업 예산(국비, 지방비 합계)의 1% 이내 (1% 이내에도 1,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 |
| 계 | | | | | | |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
(단,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는 편성 할 수 없음)
- * 예산지원 범위 등 기타사항은 【붙임】 2024년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예산지원 범위를 참고

[붙임]

2024년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예산지원 범위

1. 예산 지원내용

- 보조금 예산 편성은 다음의 법령, 훈령, 예규에 따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구분 | 내 용 | 지급범위 | 비 고 |
|-------|--|--|--------|
| 인건비 | 1.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 진행보조 - 사업총괄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 지자체별 사업 특성·여건 등에 따라 판단 | 별첨1 참고 |
| | 2. 보조원(일용직) * 1인 1일(평일 9:00~18:00/8시간) 기준으로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 |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 | |
| 운영비 | 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구 등) | 실 비 | |
| |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비 | 견적가 | |
| | 3. 안내·홍보물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제작비 - 간판, 상패 등 제작비, 참여자 모집을 위한 문자, SNS 사용비 | | |
| | 4. 의약품 구입비 : 관람객을 위해 구입하는 의약품 | 실 비 | |
| | 5. 프로그램 운영 관련 소모성 재료비 - 교구 및 교재 등 구입, 기념품 제작비, 복장비 등 | 실 비 | |
| | 6. 업무위탁대가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소규모 용역대가, 사례금 등 - 강사수당, 자문·지도 수당, 공연(출연) 수당, 원고료, 회계검증 | 지자체별 사업 특성·여건 등에 따라 판단 | 별첨1 참고 |
| | 7.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 실 비 | |
| | 8. 임차료 (버스임차료, 강의실 등 임차료, 시설임차료 등) | 실 비 | |
| 여비 | 1. 근무지내 출장(동일지역) |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 |
| | 2. 근무지외 출장(타지역) ○ 일비, 식비/ 교통비(대중교통, 자가용 등)/ 숙박비 | | |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업무협의, 간담회 등의 경비 | 전체 예산의 1% 이내 (1% 이내에도 1,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별첨1>에 제시된 금액을 기준을 하되, 프로그램의 특성·여건 등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별 적정 대가기준 별도 수립 가능
- ※ <별첨1>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규정에 의거, 지자체별 사업특성·여건 등에 따라 자체 판단 적용
- ※ '24년부터 운영비 중 기획비 삭제 (보조사업 감사결과 반영)

2. 예산 편성 시 주의사항

- 사업비는 지역문화유산 활용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 인건비 과다 편성 지양(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 총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지자체 장의 승인을 얻어 편성)
 - 1인에게 지급되는 총 경비(인건비, 수당 등)가 당해 연도 인건비 상한액 기준 초과 시, 집행 불인정
- 숙박 프로그램 및 체험이나 답사 프로그램은 참가자 실비범위 내에서 가급적 유료화하여 필요경비 일부 증당 및 참가자 참여율 제고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해야하며, 포괄적으로 편성해서는 안 됨
 - 제작비, 예비비, 잡비, 일비 등 구체적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매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아야 함
- 재료비는 세부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만 인정 (노트북, 컴퓨터, 앰프 등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 회의 관련 경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사업의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진행보조(임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당해연도 최저임금(최저시급) 준수

※ 지출 불가 항목

- 조명시설 설치 등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및 단순 사무보조 인건비(초과근무수당 포함)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일상적 환경 미화 등 기관(단체) 운영비
- 상근인력 사례비(강사료), 학술대회, 내부직원 대상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경비
- 상품권, 기념품, 답례품 등 행사지원경비(단, 일반인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제외하나, 경비 편성을 최소화하여야 함)

(별첨 1)

가.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 진행보조 인건비

○ 사업 총괄 및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 구분 | 지급액 기준 | 비고 |
|----------|--|--|
| 총괄 책임자 | - 사업 총괄 책임을 맡은 인력으로 회계 사후관리 등 사업 총괄 책임자 (참여율 50% 기준) 2,681,226원/월 | * 자격기준은 문화유산 관련분야 또는 활용 및 관광 관련분야 전공 경력 등에 대하여 지자체별 자체판단 *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가 강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해의 수당만 지급중복지급 불가 |
| 사업 관리자 | - 사업추진 실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진행자 1,344,277원/월 (참여율 50% 기준) | * 지급액 기준은 '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임('24년 사업추진시 '24년 기준단가로 변경 적용) |
| 진행 보조 인력 | -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보조, 안전관리, 무대설치 등 사업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 인력 당해 최저임금×시간 | |

* 참여율은 당해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참여비율을 말하며, 타 사업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타 사업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으로, 1개월 100% 기준금액은 2를 곱해야 함

(예시) 총괄책임자가 참여율 20%로 2개월간 수행한 경우 (2,681,226원×2) × 20% × 2개월

* 인건비는 원천징수세액을 제하고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하고, 원천징수세 납부내역을 정산자료에 첨부

나. 자문·지도 수당

| 구분 | 내 용 | 단가(천원) | |
|---------|---|--------|-----|
| 자문지도 수당 | 심사 및 자문료 - 문화유산 활용사업 관련 교육, 정책·운영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내부 참여인력은 지급불가) - 분임활동을 지도·평가하는 강사 등 | 1일당 | 100 |

*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또한,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다. 강사수당

| 구분 | 자격 기준 | 지급액(천원) | | 비고 | |
|----|---|---|----------|----------|--|
| 1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화재청(시도) 문화재위원 -대학교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 -전·현직 차관(급) 이상 -대기업총수(회장), 국영기업체 사장 | 최초 1시간 | 300 | |
| | | | 초과 (시간당) | 150 | |
| 2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문화재청(시도) 문화재전문위원 -대학교 관련학과 조교수 및 전임강사 | -문화예술분야 강사 자격증 소지자 로서 강의 경력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 최초 1시간 | 200 | |
| | | | | 초과 (시간당) | |
| 3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 | -문화예술분야 강사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최초 1시간 | 150 | |
| | | | | 초과 (시간당) | |
| 4급 | -1급~3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급~3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초 1시간 | 100 | |
| | | | | 초과 (시간당) | |

라. 공연 및 출연수당

| 구분 | 자격 기준 | 지급액(천원) | | 비고 |
|----|--|---------|-----|---|
| 1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공립예술단체 예술감독 -대학교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 1시간 | 550 | 30분 이상일 경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50%만 지급 |
| 2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국공립예술단체 악장, 지도위원 -대학교 관련학과 조교수 및 전임강사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 1시간 | 450 | |
| 3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 -국공립예술단체 단원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 1시간 | 350 | |
| 4급 | -1급~3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시간 | 250 | |

※ 동 기준에 의거 단가를 산정하되, 공연 난이도, 지명도, 공연 규모,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음.

마. 원 고 료

| 구 분 | 지 급 기 준 | 비 고 |
|-------------|--|--|
| 지급단가 | 12,000원 / A4용지 1면 | (지급 규격)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 지급한도 (기준면수) | 1) 강의 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2)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
|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 |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 |
| 원고지 |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 |
| 수정원고 등 | 1)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수정시 : 전체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원고의 50%지급 - 30% 미만 수정시 : 미지급 2)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 미지급 | ※ 다만 교육시기 및 대상, 교육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 지급가능 |

바. 작곡료 및 편곡료

| 구분 | 내 용 | 지급액 (천원) |
|-----|--|----------|
| 편 곡 | 1 등급 - 국내·외 국립 국악 및 교향악단 급 이상의 공연 또는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5년 이상 있는 자 - 문화유산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 경력 15년 이상인 자 | 500 |
| | 2 등급 - 국내 시·구립 국악 또는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있는 10년 이상 있는 자 - 문화유산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경력 10년 이상인 자 | 400 |
| | 3 등급 - 국내 음악관련 대학, 민간 국악공연,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 문화유산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경력 5년 이상인 자 | 300 |
| 작 곡 | -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가능 | |
| 감수료 | - 감수료는 등급 무관 | 50 |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인 경우, 원 편곡의 ½만 지급

*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까지 지급 가능

**6. 2024년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계획**

I 공모 요강

□ 사업 개요 및 공모 내용

- **사업명** : 2024년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 **사업목적**
 - 산사가 보유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색다른 문화 체험 기회 제공 및 고품격 문화관광 상품 육성
 -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의 브랜드화·정례화로 지속적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관광 명소화 도모
- **사업내용** : 사찰이 보유한 문화유산과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문화유산 해설, 강의, 체험, 공연 등 산사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기획·운영
- **공모대상** : 광역 및 기초 지자체(경상보조 / 국비 40%, 지방비 60%)
 - (필수조건) 지정·등록 문화유산을 보유한 사찰과 관할 지자체 간 공모신청 제안사업 추진 제반사항에 대해 협의 완료
 - * 지정·등록문화유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찰은 지원 불가
 - * 세계유산은 별도 공모사업이 있으니 해당 공모사업으로 신청
 - 보조금 지원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제72조(경비부담)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공모 접수 및 심사 일정**



- * **신청마감** : '23.7.31.(월) 18:00까지(※신청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 전자공문으로 접수하며, 용량이 방대한 파일은 압축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 **제출서류** : 서식1~3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은 8페이지 참고)

□ 사업유형 및 지원예산

| 구 분 | 시범육성형 | 집중육성형 | 지속발전형 |
|---------|----------|----------|--------|
| 사업기간* | 1~2년차 | 3~5년차 | 6년차 이상 |
| 국비 지원금액 | 4천만 원 이내 | 8천만 원 이내 | 1억원 이내 |

* 전년도 공모사업 선정에서 탈락한 경우, **기 지원받은 사업기간 중 최대 3년까지만 인정**

□ 공모 제외대상

- **동일 문화유산에 대하여 중복으로 신청하는 사업**
 - * 예시) 1개의 시도(광역시)에서 A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사업을 2개 이상 신청시 모두 탈락
- **(문화유산 활용 무관) 단순공개행사, 관광위주의 축제, 지역축제 포함·연계 사업**
 - * 예시) 천도재, 위령제, 수륙제 등 문화유산과 **관련없는 종교행사**
석가탄신일 및 특정일에 개최되는 일회성 행사(전시회, 공연, 축제 등)
사찰을 벗어난 지역(공간)에서 개최되는 체험, 공연, 강의, 답사, 재현행사 등 다도체험, 학술대회, 사찰이 보유한 문화유산과 연관성이 없는 프로그램
- **(법령위반) 문화재보호법, 보조금법 등 관련법령 위반 또는 문화유산 의미와 원형보존에 부정적 영향 우려 사업, 타 국가기관 지원중복*, 보조사업자 중복수급 등**
 - * 예시) 문체부 소관 전통문화체험지원(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등)
문체부 소관 산사문화예술제(산사음악회, 사찰축제, 문화체험행사, 산사영화제 등)
문체부 소관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사업(불교문화축전 등)
- **(문화유산 미보유) 사업 대상 사찰이 지정 또는 등록 문화유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추가 지원사항 : ICT를 활용한 실감콘텐츠 개발 ('22년~)

- **(지원내용)**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 * (예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확장현실(XR), 메타버스(Metaverse),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 미디어아트 등
- **(대상사업)** 생생, 향교·서원, **전통산사**,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야행 제외)
- **(선정규모)** 4개 분야 사업 중 공모를 통해 **5건 내외** 선정
- **(지원금액)** 건별 **국비 1억원 이내**
 - * 본 사업 금액과 별개로 신청하며, 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최종 지원금액 결정(본 사업이 '24년 공모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신청방법)** 본 사업 신청 시 **별도 양식(서식 3) 추가 제출**
- **(보조율)** 국비 40% / 지방비 60%
- **(지원요건)**

| 구 분 | 내 용 |
|------|--|
| 대상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문화유산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ICT기술을 선택하여 콘텐츠 구성 • '24년 9월까지 개발 완료 후 10월부터는 시범 운영해야 함 * '25년 사업 공모시, 해당 실감콘텐츠를 반드시 포함시켜 프로그램 구성 |
| 제한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비 및 자산취득 성격의 예산편성 불가 * (예시) 프로젝터 등 장비 취득(x), 임대(o) • 문화유산 원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 배제 • 해당 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특성이 결여된 콘텐츠 제외 |

II 사업 심사 및 선정

□ 시범육성형 심사기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판 단 기 준 |
|----------------|---------|--|
| 사업계획의 충실성 (30) | 계획의 적합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프로그램 시기, 수혜대상 적절성, 횟수, 예산 등) ○해당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이해 및 기획의도는 적절한가? |
| | 콘텐츠 경쟁력 | ○해당 문화유산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수혜대상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가?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적인가? |
| 사업운영 역량 (40) | 사업수행 역량 | ○해당 지자체는 추진의지가 높은가? ○수행단체는 추진역량(전문성, 인력)을 갖추었는가? ○프로그램은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 | 사업관리 | ○홍보의 타깃이나 추진노력은 적절한가?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방안은 갖추었는가?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은 적절한가?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는 적절한가? |
| 지속가능성 (30) | 기대효과 | ○프로그램은 문화유산 향유에 기여하는가? ○프로그램은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계획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가져오는가? |

□ 집중육성형, 지속발전형 심사기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판 단 기 준 |
|----------------|-----------|--|
| 사업계획의 충실성 (20) | 계획의 적합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프로그램 시기, 수혜대상 적절성, 횟수, 예산 등) ○해당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이해 및 기획의도는 적절한가? |
| | 콘텐츠 경쟁력 | ○해당 문화유산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수혜대상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가?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적인가? |
| 사업운영 역량 (35) | 사업수행 역량 | ○해당 지자체는 추진의지가 높은가? ○수행단체는 추진역량(전문성, 인력)을 갖추었는가? ○프로그램은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 | 사업관리 | ○홍보의 타깃이나 추진노력은 적절한가?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방안은 갖추었는가?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은 적절한가?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는 적절한가? |
| 지속가능성 (45) | 기대효과 | ○프로그램은 문화유산 향유에 기여하는가? ○프로그램은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계획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가져오는가? |
| | 모니터링 평가점수 | ○최근 2개년 모니터링 점수 평균 등급화 |

□ 가점 항목 안내 및 유의 사항

- 전년도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1점)
- 문화유산 활용사업 추진 전담조직(과, 팀, 계 등)을 설치한 지자체(1점)
-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기획, 운영(1점)
 -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문화유산 강연·공연, 자연유산 모니터링, 문화유산 탐방 관련 플로깅, 그 외 친환경 농업활동 등
 - 탄소발자국 감축, 행사폐기물 저감 등 친환경 프로그램으로 운영
- 유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1점)
- 둘 이상 지자체가 협업하여 시행하는 사업(1점)

둘 이상 지자체가 협업하여 시행하는 사업 : ①둘 이상 지자체가 하나의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역할 분담하여 시행 또는 ②둘 이상 지자체가 각자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부 프로그램 중 일부를 동일 기간 또는 동일 장소에서 수행하는 경우 ※ ①, ② 모두 단순 답사프로그램은 가점 제외

- 유의사항
 - 가점 수령 후 미실시한 경우, 다음연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에 감점(각 항목당 2점 이상) 처리
 - 사회적 약자(장애인, 다문화가족, 새터민, 이주민, 65세이상 어르신,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연계 및 여행상품 기획운영, 지역주민/단체가 기획운영은 가점사항에서 우수사업 선정기준으로 변경

□ ICT를 활용한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심사기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판 단 기 준 |
|------------------|----------|---|
| 기획역량 (30) | 콘텐츠의 경쟁력 | 콘텐츠의 창의성, 내용의 충실성, 콘텐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여부 |
| | 문화유산 연관성 | 사업의 이해도, 해당 문화유산의 내재적 의미와 가치가 드러나도록 문화유산 특성 반영 여부 |
| 사업추진체계 및 역량 (40) | 사업 추진체계 |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역할분담의 체계성과 협력도 |
| | 프로그램 운영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안전관리계획의 적절성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포함) |
| 발전성 (30) | 활성화 기여도 | 지역 활성화 기여도, 콘텐츠 운영 지속 가능성 |

□ 심사일정 및 방법

- **심사일정** : 2023. 8월 예정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 내·외부 전문가 5~10명 이내 구성,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서 등 종합 검토
 -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의 경우, 2차 PT심사 예정('23. 8월 중 / 일정 별도 통보)**
- **결과발표** : '23. 9. 15. 예정 / 문화재청 홈페이지(새소식-공지사항)

□ 세부 추진일정

| | | |
|------------------------|-----------------------|--|
| 사업 공고 | '23.6.19.(월)~7.3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 시행(문화재청→광역 지자체) ▪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공지 |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23.7.17.(월)~7.3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신청(광역 지자체 총괄 제출) ▪ 문화재청 공문 접수(광역→문화재청) |
| 심사(1차, 2차) | '23. 8월 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1차 서류 심사(필수) ▪ 2차 심사는 필요 시 별도 시행 (실감콘텐츠는 2차 심사 실시) |
| 최종 선정 결과 발표 및 보조금 사전통지 | '23.9.15. 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사업 선정 결과 발표 -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공지 ▪ 22년 보조금 사전통지(문화재청→지자체) |
| 보조금 확정 통지 | '23.12월 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보조금 확정통지(문화재청→지자체) |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24.1~2월 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사업계획서 보완 및 보조금 교부신청 ▪ (문화재청) 사업지침 및 교부결정 통지 |
| 사업 추진 (지자체) | '24.12월까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사업 추진 ▪ (문화재청) 상·하반기 워크숍 및 사업 컨설팅, 현장 모니터링 실시 |
| 사업 평가 및 포상 | '24. 12월 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과 우수사업 포상(문화재청장 표창) ▪ 「지역문화유산 활용 브랜드 사업」 예비 목록 선정 |

* 「지역문화유산 활용 브랜드 사업」 예비목록 : 기존의 우수사업을 대신하여

- ① 다수의 신청유산을 중심으로 통합된 지역 문화유산 활용(대표유산형)
- ② 지역사회 기반 및 주민 친화형 문화유산 활용(지역밀착형)
- ③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우수콘텐츠형) 등 대내외 인지도가 높은 사업을 문화재청이 인증, 브랜드화 지원

III 제출서류 및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 **공모현황 총괄표**(서식 1)
-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내역서 포함 / 서식 2)
- **실감콘텐츠 개발 추가지원 신청서**(선택사항 / 서식 3)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 **(광역)** 공모현황 총괄표(서식 1)와 함께 소관 기초 지자체의 공모 신청서 일체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 기한 엄수**
- **(기초)** 공모신청서(서식 2) 및 예산편성내역서(서식 3) 작성 제출
* **사업별 개별 파일로 저장 제출 [파일명 형식: "연번.광역 기초.문화유산명(1개).사업명"]**
(예시) 1.충남 논산.쌍계사.쌍계마바시

□ 공모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자체 대상** 공모로서 **사찰이나 민간단체 직접 신청 불가**
- 총 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산출내역이 불명확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템플스테이·산사음악회·산사영화제·사찰음식 등 문화체육관광부 중 복사업, 보유 문화유산 활용과 연관성이 없는 종교행사 및 일회성 행사 등은 공모 대상이 아님(**1차 서류심사 시 우선 탈락**)
- 본 사업 공모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문화재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세계유산 포함 대상은 신청 제외
* **세계유산 포함 대상은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사업'으로 신청할 것**

□ 공모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된 지자체는 우리 청이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취소 및 국비 전액 환수, 차년도 공모 시 패널티가 적용됨

- ① 사업 선정 후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대폭 변경하거나 사업규모가 공모 지원신청 및 심의 당시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된 경우
- ② 문화재청 또는 광역 지자체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 문화재청이 2024년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 선정을 확정·통지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주관단체 선정 및 보조금 재교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
-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유료 프로그램 운영 등 가점/우대항목이 포함되어 선정된 사업은 2024년도에 해당 프로그램을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함
- 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은 보조금법 및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사업관련 모든 홍보물 제작 시 ‘문화재청’ 및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BI’ 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 행사 진행 시, 리플릿 등 홍보물에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취지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임을 알리는 안내멘트나 홍보 문구 반드시 기입
- 문화재청은 사업관리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며 선정된 지자체와 주관단체는 문화재청의 사업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매월 추진실적 및 일정계획 제출,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템플스테이·산사음악회·산사영화제·사찰음식 등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보유 문화유산 활용과 연관성이 없는 종교행사, 일회성 행사 등과 같은 낱짜에 개최하거나 연계하여 개최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함
- 둘 이상 지자체가 협업하는 사업은 대표 지자체가 일괄하여 신청토록 함

□ 문의처 :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이재우 주무관(042-481-4744)

2024년 전통산사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현황 (총괄표)

| 연번 | 광역 | 기초 | 사업유형 | 사업명 | 2024년 사업 연차 (1,2,3 등 숫자 기재) | 대상문화유산 | | 2024년 사업내용 | | | | | 본 사업 관련 | | (추가지원) ICT 활용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관련 | | | 우대(가점) 항목 | | | | | 기타사항 | | 비고 (수행기관/단체명) | | | |
|------|----|----|------|-----|-----------------------------|--|--------------------|---------------------|----------------|-------------|---|----------------|---------------|---------------|------------------------------|----------------|-------------|---------------|-------------------------|--|----------------------------------|-------------------|------------------------|------------------|---------------|---------------------------------|--|-------------|
| | | | | | | 국가지정 | 시도지정 | 사업명(부제) | 사업기간 (행사 개최일자) | 사업장소 (행사장소) | 주요프로그램 (세부 내역사업별 요약 / 1번에 대표프로그램 기재) | 2024년 신청예산(천원) | | 자부담 (인간보조사업자) | 지원 여부 (O, X 기재) | 2024년 신청예산(천원) | | | 전년도 우수사업 선정여부 (O, X 기재) | 활동사업 전달조직 (있을 경우 조직명, 부서명, 팀명 등 해당사항 기재) | 기후변화 대응 특화 프로그램 기획, 운영 (O, X 기재) | 유료 프로그램 (O, X 기재) | 다 아상 지자체가 협업 (O, X 기재) | 자유 학년제 (O, X 기재) | | 숙박 프로그램 (O, X 기재 / 1박, 2박 등 표기) | 사업 시행방식 (직접, 보조) | |
| | | | | | | | | | | | | 국비(A) (40%) | 지방비 (B) (60%) | | | 합계(C) (A+B) | 국비(a) (40%) | 지방비 (b) (60%) | | | | | | | | | | 합계(c) (a+b) |
| (예시) | 충남 | 논산 | 시립 | 쌍계사 | 2 | 쌍계사 대웅전 (보물 408호), 쌍계사 소조서기여래상 불좌상(보물 1851호) | 쌍계사 부도 (문화재자료 80호) | 쌍계 마바시 (마음을 바꾸는 시간) | 4월~11월 | 쌍계사 (교육장) | 1. (대표 프로그램) 꽃장사로 배우는 디자인학교 (4~7월 / 10회) / 문장상, 민정 이혼교육 및 실습 / 지역 교육관계자, 일반인) 2. 쌍계 마바시(5~10월 / 3회 / 불교문화 주재 강연 및 소공연 / 청소년, 일반인) 3. 쌍계사 대웅전 캘리그래피(4~11월 / 10회) / 주한 캘리 디자인, 석고전각 체험 / 청소년, 일반인) 4. 쌍계사 숲은 이야기(5~11월 / 10회) / 쌍계사 불교 문화유산 강의, 체험 / 대학생, 일반인) 5. 쌍계 목공제작소(5~11월 / 10회) / 꽃장상 목공예 체험 / 청소년, 일반인, 관광객) | 24,000 | 36,000 | 60,000 | | ○ | 4,000 | 6,000 | 10,000 | ○ | 문화유산 활용팀 | ○ | × | × | ○ | × | 직접 (총역, 민간위탁) 또는 보조 (공모 등 사업자 신청방식 기재) | |

공모 신청서
- 2024년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

| | | | | | | | | |
|--|---|---------------------|-----------------|-----------|---------------------|----|----|----|
| 사업명 | | | | | 사업 유형 | 시범 | 집중 | 지속 |
| 대상 문화유산 | ※ 문화유산 명칭(종별) 순으로 기재 * 예시: ○○○○(국가민속), ○○○○(도유형) ※ 3개 이내의 주요 문화유산만 기재 | | | | | | | |
| 사업비 (단위: 천원) | 계 | 국비 (40%) | 지방비(60%) | | 비고 (자부담) | | | |
| | | | 광역 | 기초 | | | | |
| 사업 시행기간 | 2024년 ○월 ~ ○월 (○개월) | | 사찰명 | | | | | |
| 세부 프로그램명 | ①(대표) ② ③ ④ ※ 4개 이내(대표프로그램 1개 포함) 프로그램의 '명칭'만 기재 | | | | | | | |
| 지자체 | 지자체명 | | 부서명 | | | | | |
| | 담당자 성명(직위) | | 이메일 | | | | | |
| | 담당자 연락처 | | (사무실) (휴대폰) | | | | | |
| 2023년 월 일 신청인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직인) | | | | | | | | |
| 문화재청장 귀하 | | | | | | | | |
| 첨부 : 사업계획서(안) 1부. 끝. | | | | | | | | |

2024년도 전통산사 문화유산활용 사업계획서(안)

1. 사업요약 및 가점(우대) 항목

| | | |
|--|--|---|
| 사업명 | | |
| 대상 문화유산 | ※ 문화유산 명칭(종별) 순으로 기재 * 예시 : ○○○○(국가민속), ○○○○(도유형) * 문화재청 홈페이지「문화유산정보 - 문화재검색」에서 반드시 확인 | |
| 사업 개요 | ※ 사업의 개괄적인 내용을 간략히 작성(2~3줄 이내) | |
| 가점 (우대) 항목 <small>*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small> | 구분 |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내용 |
| | ① 전년도 우수 | ○ 사업명 : |
| | ② 문화유산 활용사업 추진 전담조직 | ○ 부서명(팀명) : ○ 구성인원 : |
| | ③ 유료 프로그램 운영 | ○ 유료 프로그램명 : ○ 참여대상 : ○ 기간(횟수) : ○ 유료화 항목 : 예시) 체험비, 참가비, 숙박비 등 ○ 유료 프로그램 운영 수입금 집행계획 : |
| | ④ 둘 이상 지자체 간 협업 | ○ 프로그램명 : ○ 참여지자체 : ○ 참여내용 : ○ 기간(횟수) : |
| | ⑤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운영 | ○ 프로그램명 : (예시 : ○○○○프로그램) - 참여대상/기간(횟수) : - 주요내용 : - 사업(프로그램) 효과 : |

2. 사업의 기획의도 ☞ 사업의 주제(컨셉), 특수성 등을 간략히 기재

-
-

3. 세부 프로그램 구성 ☞ 4개 이내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 (세부 프로그램당 최대 1페이지 이내) ☞ 둘 이상 지자체의 협업 프로그램은 세부 프로그램명 옆에 "협업프로그램"임을 명시할 것

① (대표)세부 프로그램명 :

- 기간 : '23년 ○월 ○일 ~ ○월 ○일(총○회)
- 장소 : ☞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특징(수용인원, 역사성이나 상징적 의미, 편의시설 및 교통 등 행사개최 여건 등)을 간략히 기재
- 참여대상 :
- 세부내용 : ☞ 프로그램 구성, 내용, 일정 등 기재. 코로나-19 대응체계 포함

② 세부 프로그램명 :

- 기간 : '23년 ○월 ○일 ~ ○월 ○일(총○회)
- 장소 :
- 참여대상 :
- 세부내용 :

③ 세부 프로그램명 :

- 기간 : '23년 ○월 ○일 ~ ○월 ○일(총○회)
- 장소 :
- 참여대상 :
- 세부내용 :

④ 세부 프로그램명 :

- 기간 : '23년 ○월 ○일 ~ ○월 ○일(총○회)
- 장소 :
- 참여대상 :
- 세부내용 :

4. 사업 운영 및 관리 계획

가. 사업시행방식 : 지자체 직접(위탁 등) 추진 / 민간보조 추진 중 택 1

- ☞ 공모시점 수행기관/단체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단체명"을 명시할 수 있음
 - 1) 공모시점에서 수행기관이 명시된 경우, 활용사업 인건비를 23년 1월부터 인정
 - 2) 공모시점에서 수행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및 보조금 교부 신청 시, 공모시점의 수행기관이 변경된 경우, 인건비는 보조금 교부 시점부터 인정

나. 조직도(추진체계)

- ☞ 행사를 운영하는 조직의 추진체계를 알 수 있는 조직도를 이미지나 표 형태로 작성

다. 주요 운영인력(지자체, 수행기관, 그 외 협력기관의 주요 참여인력 현황)

| 기관 | 역할(담당 업무) | 인원수(명) | 비고 |
|----|-----------|--------|----|
| | | | |
| | | | |

* 기관 : 지자체, 수행기관/단체, 그 외 협력기관/단체 중 택 1

5. 안전관리대책(우천 및 돌발상황, 관람객 밀집, 감염병 대응 등)

- ☞ (야외 행사) 우천 대비 및 관람객 밀집 대비, 차량 통제 등 안전에 대비한 계획을 기술
- ☞ (실내 행사) 행사장 소방·안전점검 결과, 비상 시 대피로 등 안전 확보와 관련된 계획 기술
-

6.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 또는/및 내용

- (프로그램 운영)
 -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지역농수산물 이용 등
- (프로그램 내용)
 - ☞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문화유산 강연·공연, 폐기물 업사이클링, 자연유산 모니터링, 문화유산 탐방과 관련된 플로깅, 그 외 친환경 농업활동 등

7.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 관람객수, 관람객 만족도, 홍보효과, 일자리 창출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계량목표 기재**
-

8. 사업 추진경과

(단위 : 천원)

| 연도 | 사업명 | 사업내용 | 소요예산 (국비지원액) | 재원 |
|----|-----|------|-----------------|----------|
| | | | | ex. 문화재청 |
| | | | | ex. 교육부 |
| | | | | |

* 신청사업 또는 유사사업 최근 3년간 국비지원 실적 기재

9. 기타사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가. 최근 3년 간 개발한 체험키트 등 상품화 가능 콘텐츠 내역

| 연도 | 콘텐츠 품목 | 콘텐츠 세부내용 | 비고 |
|----|-------------|----------|----|
| | ex. 체험키트 | | |
| | ex. 여행 프로그램 | | |
| | | | |

나. 언론보도 ☞ 행사에 대한 호평 등 중점 보도내용이 있을 경우 최대 3건 이내 기재 (행사일정 등 단순 소개 보도는 제외)

| 보도일자 | 언론사 | 보도내용(기사명, 주요내용 등) | 비고 |
|------|-----|-------------------|----|
| | | | |
| | | | |
| | | | |

10. 예산편성 내역서

가.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 계 | 국비(40%) | 지방비(60%) | | 기타 (민간단체 기부금 등) |
|---|---------|----------|----|--------------------|
| | | 광역 | 기초 | |
| | | | | |

나. 예산편성 총괄표

(단위 : 천원)

| 목 | 세목 | 세부내용 | 산출내역 | | | 금액 | 비고 |
|----------------|-------------------------|---|------|-------|-------|----|----|
| | | | 단가 | 식/개/명 | 월/회/일 | | |
| 인건비 (110) | 일용임금 (04) | | | | | | |
| 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 (01) | | | | | | |
| | 공공요금 및 계세 (02) | | | | | | |
| | 임차료 (07) | | | | | | |
| | 재료비 (11) | | | | | | |
| | ⋮ | | | | |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 | | | | |
| 업무추진비 (240) | 사업추진 비(01) | *사업 예산(국비, 지방비 합계) 의 1% 이내 (1% 이내여도 1,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 |
| 계 | | | | | |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
(단,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는 편성 할 수 없음)

* 자료 작성 시 **【붙임】 2024년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예산지원 범위를 참조**

추가지원 신청서
- 20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

| | | | | | |
|---|---|-------------|-------------------|-------|----------------------------|
| 본 사업명 | | | | 사업 구분 | 생생, 향교·서원, 전통산사, 고택종갓집 중 1 |
| 실감콘텐츠명 | | | | | |
| 대상문화유산 | * 문화유산 명칭(종별) 순으로 기재 예시: ○○○○(국가민속), ○○○○(도유형) 3개 이내의 주요 문화유산만 기재 | | | | |
| 사업비 (단위: 천원) | 계 | 국비 (40%) | 지방비(60%) | | 비고 (자부담) |
| | | | 광역 | 기초 | |
| 실감콘텐츠 세부내용 | ① 정보통신기술(ICT) 종류 | | | | |
| | ② 개발기간 | | ○월 ~ ○월(○개월) | | |
| | ③ 운영기간 및 횟수 | | ○월 ~ ○월(○개월)/ ○○회 | | |
| | ④ 운영장소 | | | | |
| | ⑤ 주제(컨셉) | | | | |
| | ○ | | | | |
| ⑥ 콘텐츠 내용(줄거리, 특성 등) 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자체 | 지자체명 | | 부서명 | | |
| | 담당자 성명(직위) | | 이메일 | | |
| | 담당자 연락처 | (사무실) | | (휴대폰) | |
| 2023년 월 일 | | | | | |
| 신청인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직인) | | | | | |
| 문화재청장 귀하 | | | | | |
| 첨부 : 실감콘텐츠 개발 계획서(안) 1부. 끝. | | | | | |

20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실감콘텐츠 개발 계획서(안)

1. 본 사업명 :

2. 실감콘텐츠명 :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실감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필요성을 기재

-
-

4. 콘텐츠 주제(컨셉)

가. 정보통신기술(ICT) 종류 :

나. 콘텐츠 주제(컨셉) : ☞ 주제(컨셉), 기획의도, 차별성, 특수성 등을 기재

5. 콘텐츠 내용 및 관련 이미지

가. 내용(줄거리, 특성 등) ☞ 콘텐츠의 내용, 줄거리, 특성 등을 핵심적으로 기재

-
-

나. 관련 이미지 ☞ 현장 이미지, 유사 사례 이미지 등을 저용량으로 첨부

6. 개발 및 운영계획

가. 개발기간 : 2024년 ○월 ~ ○월(○개월)

나. 운영기간 및 횟수 : 2024년 ○월 ~ ○월(○개월)/ ○○회

다. 운영장소 :

라. 운영계획

-
-
- ☞ 모객방법(자유관람, 예약관람 등), 본 사업(세부 프로그램)과의 연계방법 등 세부사항 기재

7.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
- ☞ 해당 콘텐츠 체험 인원수, 관람객 만족도, 홍보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계량목표(예상) 기재

8. 그 밖의 참고사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
- ☞ 유사사업 실적, 기반구축 현황 등 심사 시 고려할만한 사항, 신청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참고자료(언론, 전문지 보도 등)가 있을 경우 작성(이미지는 저용량으로 첨부)

9. 예산편성내역서

가.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 계 | 국비(40%) | 지방비(60%) | | 기타 (민간단체 기부금 등) |
|---|---------|----------|----|--------------------|
| | | 광역 | 기초 | |
| | | | | |

나. 예산편성 총괄표

(단위 : 천원)

| 목 | 세목 | 세부내용 | 산출내역 | | | 금액 | 비고 |
|----------------|-------------------------|--|------|-------|-------|----|----|
| | | | 단가 | 식/개/명 | 월/회/일 | | |
| 인건비 (110) | 임용임금 (04) | | | | | | |
| 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 (01) | | | | | | |
| | 공공요금 및 계세 (02) | | | | | | |
| | 임차료 (07) | | | | | | |
| | 재료비 (11) | | | | | | |
| ⋮ | | | | | |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 | | | | |
| 업무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 (01) | *사업 예산(국비, 지방비 합계)의 1% 이내 (1% 이내여도 1,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 |
| 계 | | | | | | |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
(단,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는 편성 할 수 없음)
- * 예산지원 범위 등 기타사항은 【붙임】 2024년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예산지원 범위를 참조

【붙임】

2024년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예산지원 범위

1. 예산 지원내용

- 보조금 예산 편성은 다음의 법령, 훈령, 예규에 따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구분 | 내 용 | 지급범위 | 비 고 |
|-------|--|--|--------|
| 인건비 | 1.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 진행보조 - 사업총괄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 지자체별 사업 특성·여건 등에 따라 판단 | 별첨1 참고 |
| | 2. 보조원(일용직) * 1인 1일(평일 9:00~18:00/8시간) 기준으로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 |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 | |
| 운영비 | 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구 등) | 실 비 | |
| |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비 | 견적가 | |
| | 3. 안내·홍보물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제작비 - 간판, 상패 등 제작비, 참여자 모집을 위한 문자, SNS 사용비 | | |
| | 4. 의약품 구입비 : 관람객을 위해 구입하는 의약품 | 실 비 | |
| | 5. 프로그램 운영 관련 소모성 재료비 - 교구 및 교재 등 구입, 기념품 제작비, 복장비 등 | 실 비 | |
| | 6. 업무위탁대가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소규모 용역대가, 사례금 등 - 강사수당, 자문·지도 수당, 공연(출연) 수당, 원고료, 회계검증 | 지자체별 사업 특성·여건 등에 따라 판단 | 별첨1 참고 |
| | 7.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 실 비 | |
| | 8. 임차료 (버스임차료, 강의실 등 임차료, 시설임차료 등) | 실 비 | |
| 여비 | 1. 근무지내 출장(동일지역) |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 |
| | 2. 근무지외 출장(타지역) ○ 일비, 식비/ 교통비(대중교통, 자가용 등)/ 숙박비 | | |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업무협의, 간담회 등의 경비 | 전체 예산의 1% 이내 (1% 이내에도 1,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별첨1>에 제시된 금액을 기준을 하되, 프로그램의 특성·여건 등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별 적정 대가기준 별도 수립 가능
- ※ <별첨1>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규정에 의거, 지자체별 사업특성·여건 등에 따라 자체 판단 적용
- ※ '24년부터 운영비 중 기획비 삭제 (보조사업 감사결과 반영)

2. 예산 편성 시 주의사항

- 사업비는 지역문화유산 활용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 인건비 과다 편성 지양(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 총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지자체 장의 승인을 얻어 편성)
 - 1인에게 지급되는 총 경비(인건비, 수당 등)가 당해 연도 인건비 상한액 기준 초과 시, 집행 불인정
- 숙박 프로그램 및 체험이나 답사 프로그램은 참가자 실비범위 내에서 가급적 유료화하여 필요경비 일부 증당 및 참가자 참여율 제고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해야하며, 포괄적으로 편성해서는 안 됨
 - 제작비, 예비비, 잡비, 일비 등 구체적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매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아야 함
- 재료비는 세부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만 인정 (노트북, 컴퓨터, 앰프 등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 회의 관련 경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사업의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진행보조(임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당해연도 최저임금(최저시급) 준수

※ 지출 불가 항목

- 조명시설 설치 등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및 단순 사무보조 인건비(초과근무수당 포함)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일상적 환경 미화 등 기관(단체) 운영비
- 상근인력 사례비(강사료), 학술대회, 내부직원 대상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경비
- 상품권, 기념품, 답례품 등 행사지원경비(단, 일반인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제외하나, 경비 편성을 최소화하여야 함)

(별첨 1)

가.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 진행보조 인건비

○ 사업 총괄 및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 구분 | 지급액 기준 | 비고 |
|----------|--|---|
| 총괄 책임자 | - 사업 총괄 책임을 맡은 인력으로 회계 사후관리 등 사업 총괄 책임자 (참여율 50% 기준) 2,681,226원/월 | * 자격기준은 문화유산 관련분야 또는 활용 및 관광 관련분야 전공 경력 등에 대하여 자체별 자체판단 *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가 강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해의 수당만 지급(중복지급 불가) |
| 사업 관리자 | - 사업추진 실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진행자 1,344,277원/월 (참여율 50% 기준) | * 지급액 기준은 '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임('24년 사업추진시 '24년 기준단가로 변경 적용) |
| 진행 보조 인력 | -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보조, 안전관리, 무대설치 등 사업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 인력 당해 최저임금 x 시간 | |

* 참여율은 당해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참여비율을 말하며, 타 사업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타 사업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으로, 1개월 100% 기준금액은 2를 곱해야 함

(예시) 총괄책임자가 참여율 20%로 2개월간 수행한 경우 (2,681,226원 x 2) x 20% x 2개월

* 인건비는 원천징수세액을 제하고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하고, 원천징수세 납부내역을 정산자료에 첨부

나. 자문·지도 수당

| 구분 | 내 용 | 단가(천원) | |
|----------|---|--------|-----|
| 자문·지도 수당 | 심사 및 자문료 - 문화유산 활용사업 관련 교육, 정책·운영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내부 참여인력은 지급불가) - 분임활동을 지도·평가하는 강사 등 | 1일당 | 100 |

*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또한,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다. 강사수당

| 구분 | 자격 기준 | 지급액(천원) | 비고 |
|----|---|----------|-----|
| 1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화재청(시도) 문화재위원 -대학교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 최초 1시간 | 300 |
| | | 초과 (시간당) | 150 |
| 2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문화재청(시도) 문화재전문위원 -대학교 관련학과 조교수 및 전임강사 | 최초 1시간 | 200 |
| | | 초과 (시간당) | 100 |
| 3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 | 최초 1시간 | 150 |
| | | 초과 (시간당) | 70 |
| 4급 | -1급~3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초 1시간 | 100 |
| | | 초과 (시간당) | 40 |

라. 공연 및 출연수당

| 구분 | 자격 기준 | 지급액(천원) | 비고 |
|----|---|---------|-----|
| 1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국립예술단체 예술감독 -대학교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 1시간 | 550 |
| 2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국립예술단체 악장, 지도위원 -대학교 관련학과 조교수 및 전임강사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 1시간 | 450 |
| 3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 -국립예술단체 단원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 1시간 | 350 |
| 4급 | -1급~3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시간 | 250 |

※ 동 기준에 의거 단가를 산정하되, 공연 난이도, 지명도, 공연 규모,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음.

마. 원 고 료

| 구 분 | 지 급 기 준 | 비 고 |
|-------------|--|--|
| 지급단가 | 12,000원 / A4용지 1면 | (지급 규격)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 지급한도 (기준면수) | 1) 강의 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2)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
|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 |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 |
| 원고지 |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 |
| 수정원고 등 | 1)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수정시 : 전체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원고의 50%지급 - 30% 미만 수정시 : 미지급 2)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 미지급 | ※ 다만 교육시기 및 대상, 교육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 지급가능 |

바. 작곡료 및 편곡료

| 구분 | 내 용 | 지급액 (천원) |
|-----|--|----------|
| 편 곡 | 1 등급 - 국내·외 국립 국악 및 교향악단 급 이상의 공연 또는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5년 이상 있는 자 - 문화유산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 경력 15년 이상인 자 | 500 |
| | 2 등급 - 국내 시·구립 국악 또는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있는 10년 이상 있는 자 - 문화유산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경력 10년 이상인 자 | 400 |
| | 3 등급 - 국내 음악관련 대학, 민간 국악공연,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 문화유산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경력 5년 이상인 자 | 300 |
| 작 곡 | -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가능 | |
| 감수료 | - 감수료는 등급 무관 | 50 |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시 경우, 원 편곡의 1/2만 지급

*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까지 지급 가능

**7. 2024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공모계획**

I 사업 개요 및 공모 내용

□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4년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 사업목적

- 고택·종갓집 등을 활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체험 기회 제공
- 고택 활용 프로그램의 상설화를 통한 전통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관광자원화 도모

○ 사업기간 : 2024년 1 ~ 12월

○ 사업내용 : 고택·종갓집 등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전통 생활모습과 결합한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원대상 : 지정유산(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명승, 시도자연유산, 무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비지정문화유산 제외)

※ 국가민속문화유산 중 민속마을은 제외(개별 지정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자치단체 경상보조)

○ 보조금 보조율 : 국비 40%, 지방비 60%

○ 보조금 지원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제72조(경비부담)

○ 공모 접수 및 심사 일정

| | | | |
|--------------|-----------------------|--------|-------------------|
| 공모계획 공고 | 사업신청/접수 | 공모심사 | 최종결과 발표 |
| '23.6.19.(월) | '23.7.17.(월)~7.31.(월) | '23.8월 | '23.9.15. (예정) |

* 신청마감 : '23.7.31.(월) 18:00까지(※신청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전자공문으로 접수하며, 용량이 과다한 첨부파일은 담당자 메일(kong9217@korea.kr)로 송부

* 제출서류 : 서식1 ~ 3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은 9페이지 참고)

□ 사업유형 및 지원예산

| 구분 | 일반 체험형 | 숙박·체류형 |
|--------|---|--|
| 사업 대상 | •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고택 및 증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생가나 가옥 포함) | |
| 사업 내용 | • 고택·종갓집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전통생활모습과 결합한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기획·운영 (대표 프로그램 선정 필수) • 생생 문화유산 사업과 차별화 필수 (세부 프로그램 중 해당 문화유산과 관련성이 낮은 일반적인 공연, 공예 체험 등 지양) | |
| 사업 특성 | • 당일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 • 1박2일 이상의 숙박 프로그램을 상설(연간 10회 이상) 운영 • 주변 생태·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방문객들의 지역 체류 유도 |
| 체험 구성* | • ①~⑥ 중 3가지 이상 포함 (의/식/주 중 하나는 특화하여 필수 포함) | • ①~⑦ 중 5가지 이상 포함 |
| 지원금액 | 국비 8천만원 이내 + α(추가지원) | 국비 1억원 이내 + α(추가지원) |
| 추가지원** |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은 지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예산 추가 지원 (단, 신청금액 범위 내) | 1)집성촌 내 위치하여 주변의 숙박 지원이 가능한 사업, 2)외국인 대상 숙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은 각각 지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예산 추가 지원 (단, 신청금액 범위 내) |

* 7가지 체험 구성

- ① 의(衣) 체험: 해당 시대적 배경을 반영,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한복을 입는 등 최소한의 의복 체험이 이루어져야 함
- ② 식(食) 체험: 종갓집의 경우 내림 음식, 고택의 경우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한 음식을 직접 만들거나 먹는 체험이 이루어져야 함
- ③ 주(住) 체험: 해당 고택·종갓집의 건축적 특성 소개, 건축과 관련된 만들기 체험, 숙박 체험 등이 이루어져야 함
- ④ 의례(儀禮) 체험: 접빈다례, 밥상머리 교육, 불전위제사 등 장소와 지역에 맞는 의례 체험이 이루어져야 함
- ⑤ 전통문화 체험: 세시풍속, 놀이문화, 농경문화, 무형문화유산 등 각 지역의 특색을 담아낸 문화 체험이 이루어져야 함
- ⑥ 역사 체험: 해당 문화유산과 관련된 인물, 이야기를 콘텐츠화한 역사 체험이 이루어져야 함
- ⑦ 생태·문화자원 체험: 문화유산 주변 지역의 관광자원(생태·문화자원)과 연계한 체험이 이루어져야 함

** 추가지원 예시

- (예시1) 일반 체험형 사업으로 신청금액은 6,000만원이고 심사에서 3,6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된 경우 → 외국인 프로그램 운영 시 최대 360만원 추가하여 최종 3,960만원 지원
- (예시2) 숙박·체류형 사업으로 신청금액은 8,000만원이고 심사에서 75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된 경우 → 주변 숙박지원과 외국인 프로그램 운영 둘 다 해당 시 최대 1,500만원 추가 가능하나, 최종 8000만원 지원(신청금액 범위 내)

□ 사업요건

| | |
|----------|--|
| 필수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화장실, 교육장, 숙박시설 등) ○ 고액종가 소유자(관리자)와 장소 및 시설 사용,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 이행(사전협의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 패널티 부여) |
| 제외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문화유산에 대하여 중복으로 신청하는 사업 * 예시) 1개의 시도(광역시)에서 A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사업을 2개 이상 신청시 모두 탈락 ○ 지자체의 사업수행 의지가 낮은 사업 * 예시) 행정사항(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모니터링 진행, 월보 제출 등) 비협조 사업 부적정한 예산집행 등 추진주체 간 마찰 발생사업 전문가 평가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전년도 지방비 확보 관련 문제 발생 사업 과년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미수납금이 있는 지자체 등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집행점검에 불응하는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타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 전통문화체험 지원사업(전통한옥 체험, 남도고택 체험 등) - 종가음식 지원사업(종가음식 체험, 관광 등), 팜스테이 등 ○ 문화유산의 활용과 관계없는 단순 행사, 기존 축제 연계 사업 - 특정일에만 개최되는 일회성 행사(전시, 공연, 축제 등) - 고택·종가집을 벗어난 지역(공간)에서 개최되는 체험, 강의, 재현행사 등 - 고택·종가집의 고유한 전통문화, 대상 문화유산과 연관성이 없는 프로그램 ○ 문화유산 의미와 원형 보존에 부정적 우려가 있는 사업 ○ 「문화재보호법」 등 제반 법령 및 회계질서를 위반하는 사업 |
| 가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1점) ○ 문화유산 활용사업 추진 전담조직(과, 팀, 계 등)을 설치한 지자체(1점) ○ 유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1점) ○ 둘 이상 지자체가 협업하여 시행하는 사업(1점) ○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1점) <p>* 둘 이상 지자체가 협업하여 시행하는 사업 : ① 둘 이상 지자체가 하나의 문화유산활용사업을 역할 분담하여 시행 또는 ② 둘 이상 지자체가 각각 문화유산활용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부 프로그램 중 일부를 동일 기간 또는 동일 장소에서 수행하는 경우 ※ ①, ② 모두 단순 답사프로그램은 가점 제외</p> <p>* 사회적 약자(장애인, 다문화가족, 새터민, 이주민, 65세이상 어르신,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연계 및 여행상품 기획운영, 지역주민/단체가 기획운영은 가점사항에서 우수사업 선정기준으로 변경</p> <p>* 가점 및 추가지원 예산 수령 후 미실시한 경우 다음연도 지역문화유산 활용 사업에 감점(각 항목당 2점) 처리</p> |

□ 추가 지원사항 : ICT를 활용한 실감콘텐츠 개발 ['22년~]

- **지원내용**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 (예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확장현실(XR), 메타버스(Metaverse),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 미디어아트 등
- **대상사업** : 생생, 향교·서원, 전통산사, **고택·종가집 활용사업**(야행 제외)
- **선정절차** : 4개 분야 사업 중 공모를 통해 선정
- **지원금액** : 건별 **국비 1억원 이내**
* 본 사업 금액과 별개로 신청하며, 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최종 지원금액 결정(본 사업이 '24년 사업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본 사업 신청 시 **별도 양식(서식3) 추가 제출**
- **보조율** : 국비 40% / 지방비 60%
- **지원요건**

| 구분 | 내용 |
|----------|---|
| 대상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문화유산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ICT기술을 선택하여 콘텐츠 구성 • '24년 9월까지 개발 완료 후 10월부터는 시범 운영 * '25년 사업 공모시, 해당 실감콘텐츠를 반드시 포함시켜 프로그램 구성 |
| 제한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비 및 자산취득 성격의 예산편성 불가 * (예시) 프로젝트 등 장비 취득(x), 임대(o) • 문화유산 원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 배제 • 해당 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특성이 결여된 콘텐츠 제외 |

II 사업 심사 및 선정

□ 일반체험형 심사기준

* 가점은 p.4 참조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판 단 기 준 |
|----------------|---------------|--|
| 사업계획의 충실성 (40) | 계획의 적합성 (20)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프로그램 시기, 수혜대상 적절성, 횟수, 예산 등) 홍보의 타겟이나 추진노력은 적절한가? |
| | 프로그램 경쟁력 (20) | 해당 고액종가의 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가? 수혜대상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가? |
| 사업운영 역량 (40) | 사업수행 역량 (20) | 해당 지자체는 추진의지가 높은가? 수행단체는 추진역량(전문성, 인력)을 갖추었는가?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는 갖추었는가?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는 적절한가? |
| | 협력적 거버넌스 (20) | 고액·종가 소유자(관리자)의 참여 의사가 있는가? 지역 단체(사회적 기업 등)와의 협력체계는 갖추었는가? 지역주민 참여(기획, 운영 등)를 위한 방안은 갖추었는가? |
| 지속 가능성 (20) | 기대효과 (20) | 프로그램은 중가문화의 보전 및 향유에 기여하는가? 프로그램은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 숙박·체류형 심사기준

* 가점은 p.4 참조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판 단 기 준 |
|----------------|---------------|--|
| 사업계획의 충실성 (30) | 계획의 적합성 (10)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프로그램 시기, 수혜대상 적절성, 횟수, 예산 등) 홍보의 타겟이나 추진노력은 적절한가? |
| | 프로그램 경쟁력 (20) | 해당 고액종가의 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가? 수혜대상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가? |
| 사업운영 역량 (50) | 사업수행 역량 (30) | 해당 지자체는 추진의지가 높은가? 수행단체는 추진역량(전문성, 인력)을 갖추었는가?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는 갖추었는가?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는 적절한가? |
| | 협력적 거버넌스 (20) | 고액·종가 소유자(관리자)의 참여 의사가 있는가? 지역 단체(사회적 기업 등)와의 협력체계는 갖추었는가? 지역주민 참여(기획, 운영 등)를 위한 방안은 갖추었는가? |
| 지속 가능성 (20) | 기대효과 (20) | 프로그램은 중가문화의 보전 및 향유에 기여하는가? 프로그램은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 ICT를 활용한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심사기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판 단 기 준 |
|------------------|----------|---|
| 기획역량 (30) | 콘텐츠의 경쟁력 | 콘텐츠의 창의성, 내용의 충실성, 콘텐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여부 |
| | 문화유산 연관성 | 사업의 이해도, 해당 문화유산의 내재적 의미와 가치가 드러나도록 문화유산 특성 반영 여부 |
| 사업추진체계 및 역량 (40) | 사업 추진체계 |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역할분담의 체계성과 협력도 |
| | 프로그램 운영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안전관리계획의 적절성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포함) |
| 발전성 (30) | 활성화 기여도 | 지역 활성화 기여도, 콘텐츠 운영 지속 가능성 |

□ 심사일정 및 방법

- 심사일정 : '23. 8월 예정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 내·외부 전문가 5~10명 이내 구성,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서 등 종합 검토
 -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의 경우, 2차 PT심사 예정('23. 8월 중 / 일정 별도 통보)
- 결과발표 : '23. 9. 15. 예정 / 문화재청 홈페이지(새소식·공지사항)

□ 세부 추진일정

| | | |
|------------------------|-----------------------|---|
| 계획 공고 | '23.6.19.(월)~7.3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문 시행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공지 |
| ↓ | | |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23.7.17.(월)~7.3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신청(광역 지자체 수합 제출) 문화재청 공문 접수 |
| ↓ | | |
| 심사 | '23.8월 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1차 서류 심사(필수) 2차 심사는 필요 시 별도 시행 (실감콘텐츠는 2차 심사 실시) |
| ↓ | | |
| 최종 선정 결과 발표 및 보조금 사전통지 | '23.9.15. 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 사업 선정 결과 발표 -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공지 '24년 보조금 사전통지(문화재청→지자체) |
| ↓ | | |
| 보조금 확정 통지 | '23.12월 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 보조금 확정통지(문화재청→지자체) |
| ↓ | | |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24.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사업계획서 보완 및 보조금 교부신청 (문화재청) 사업지침 및 교부결정 통지 |
| ↓ | | |
| 사업 추진 (지자체) | '24.3~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사업 추진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반기 워크숍 및 사업 컨설팅 -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사업 홍보 등 지원 |
| ↓ | | |
| 사업 평가 및 포상 | '24.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성과 우수사업 포상 (문화재청장 표창) 지역문화유산 활용 브랜드 사업 예비목록 선정 |

III 제출서류 및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 공모현황 총괄표(서식 1)
-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내역서 포함 / 서식 2)
- 실감콘텐츠 개발 추가지원 신청서(선택사항 / 서식 3)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 (광역) 공모현황 총괄표(서식 1)와 함께 소관 기초 지자체의 공모신청서 일체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 기한 엄수**
- (기초) 공모신청서(서식 2) 작성 제출
 - * 사업별 개별 파일로 저장 제출 [파일명 형식: "연번.광역 기초.문화유산명(1개).사업명"] (예시) 1경북 안동시.임청각.임청각에서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다

□ 공모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자체 대상 공모로서 **민간 신청 불가**
- 사업비 산출내역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공모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문화재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사업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된 지자체는 우리 청이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취소 및 국비 전액 환수, 차년도 공모 시 패널티가 적용됨**
 - 사업 선정 후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대폭 변경하거나 사업규모가 공모 지원신청 및 심의 당시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될 경우
 - 문화재청 또는 광역 지자체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 문화재청이 '24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공모 선정을 확정·통지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지체없이 주관단체 선정 및 보조금 재교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유료 프로그램 운영 등 **가점/우대항목**이 포함되어 선정된 사업은 '24년도에 해당 프로그램을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함
- 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은 보조금법 및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사업관련 모든 홍보물 제작 시 '**문화재청**' 및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BI**'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문화재청은 사업관리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며 선정된 지자체와 주관단체는 문화재청의 사업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매월 추진실적 및 일정계획 제출,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하여야 함
- 둘 이상 지자체가 협업하는 사업은 대표 지자체가 일괄하여 신청토록 함

□ 문의처 :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공병주 주무관[042-481-4747]

공모 신청서
- 2024년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

| | | | | | | | |
|--|---|-----------------|-----------------|-----------|-----------------|--------|--------|
| 사업명 | | | | | 사업 유형 | 일반 체험형 | 숙박·체류형 |
| 대상 문화유산 | ① 문화유산 명칭(종별) 순으로 기재 * 예시: ○○○○(국가민속), ○○○○(도유형) ② 3개 이내의 주요 문화유산만 기재 | | | | | | |
| 사업비 (단위: 천원) | 계 | 국비 (40%) | 지방비(60%) | | 비고 (자부담) | | |
| | | | 광역 | 기초 | | | |
| 세부 프로그램명 | ①(대표) ② ③ ④ ⑤ 4개 이내(대표프로그램 1개 포함) 프로그램의 '명칭'만 기재 | | | | | | |
| 지자체 | 지자체명 | | 부서명 | | | | |
| | 담당자 성명(직위) | | 이메일 | | | | |
| |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 | (휴대폰) | | | | |
| 2023년 월 일 신청인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직인) | | | | | | | |
| 문화재청장 귀하 | | | | | | | |
| 첨부 : 사업계획서(안) 1부. 끝. | | | | | | | |

2024년도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계획서(안)

1. 사업요약 및 가점(우대) 항목

| | | |
|---|---|---|
| 사업명 | | |
| 대상 문화유산 | ① 문화유산 명칭(종별) 순으로 기재 * 예시 : ○○○○(국가민속), ○○○○(도유형) * 문화재청 홈페이지「문화유산정보 - 문화유산검색」에서 반드시 확인 | |
| 사업 개요 | ② 사업의 개괄적인 내용을 간략히 작성(2~3줄 이내) | |
| 가점(우대) 항목 *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 | 구분 |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내용 |
| | ① 전년도 우수 | ○ 사업명 : |
| | ② 문화유산 활용 사업 추진 전담 조직 설치 지자체 | ○ 부서명(팀명) : ○ 구성인원 : |
| | ③ 유료 프로그램 운영 | ○ 유료 프로그램명 : ○ 참여대상 : ○ 기간(횟수) : ○ 유료화 항목 : 예시) 체험비, 참가비, 숙박비 등 ○ 유료 프로그램 운영 수입금 집행계획 : |
| | ④ 둘 이상 지자체가 협업하여 기획·운영 | ○ 프로그램명 : ○ 참여지자체 : ○ 참여내용 : ○ 기간(횟수) : |
| | ⑤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기획·운영 <신규> | ○ 프로그램명 : ○ 참여내용 : ○ 기간(횟수) : |
| 예산 추가지원 항목 *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 | ①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 ○ 구분 : 별도 프로그램 기획·운영/ 프로그램 일부 회차를 외국인 대상 운영 중 택1 ○ 프로그램명 : ○ 참여대상 : ○ 기간(횟수) : ○ 모객방법 : |
| | ② 주변의 숙박 지원 가능 (집성촌 위치) | ○ 집성촌(주변시설)명 : ○ 회당 숙박 지원규모(인원) : ○ 연간 지원횟수 : |

- * 사회적 약자연계 및 여행상품 기획운영, 지역주민/단체가 기획운영은 가점사항에서 우수사업 선정기준으로 변경
- * 가점 및 추가지원 예산 수령 후 미실시한 경우 다음연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에 감점(각 항목당 2점) 처리

2. 사업의 기획의도 ☞ 사업의 주제(컨셉), 특수성 등을 간략히 기재

-
-

3. 세부 프로그램 구성 ☞ 소수 프로그램(3개 내외)의 밀도 있는 운영 지향(세부 프로그램당 최대 1페이지 이내, 세부 프로그램별로 해당 문화유산의 의의, 가치와의 연관성을 기술할 것) ☞ 내부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편성 불가(직원 교육은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유산 활용 전문인력 교육' 활용 권고) ☞ 둘 이상 지자체의 협업 프로그램,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은 세부 프로그램명 옆에 "협업프로그램",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임을 명시할 것

① (대표)세부 프로그램명 :

- 기간 : '24년 ○월 ○일 ~ ○월 ○일(총○회)
- 장소 : ☞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특징(수용인원, 역사성이나 상징적 의미, 편의시설 및 교통 등 행사개최 여건 등)을 간략히 기재
- 참여대상 :
- 세부내용 : ☞ 프로그램 구성, 내용, 일정 등 기재. 코로나-19 대응체계 포함

② 세부 프로그램명 :

- 기간 : '24년 ○월 ○일 ~ ○월 ○일(총○회)
- 장소 :
- 참여대상 :
- 세부내용 :

③ 세부 프로그램명 :

- 기간 : '24년 ○월 ○일 ~ ○월 ○일(총○회)
- 장소 :
- 참여대상 :
- 세부내용 :

4. 사업 운영 및 관리계획

가. 사업시행방식 : 지자체 직접 추진/ 대행 추진 중 택 1

- ☞ 수행기관/단체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단체명"을 명시할 수 있음
 - * i)공모시점에서 수행기관이 명시된 경우, 활용사업 인건비를 24년 1월부터 인정
 - ii)공모시점에서 수행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및 iii) 보조금 교부 신청 시, 공모시점의 수행기관이 변경된 경우, 인건비는 보조금 교부 시점부터 인정

나. 조직도(추진체계)

- ☞ 행사를 운영하는 조직의 추진체계를 알 수 있는 조직도를 이미지나 표 형태로 작성

다. 주요 운영인력(지자체, 수행기관, 그 외 협력기관의 주요 참여인력 현황)

| 기관 | 역할(담당 업무) | 인원수(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기관 : 지자체, 수행기관/단체, 그 외 협력기관/단체 중 택 1

라. 안전관리대책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문화재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p.85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양식 변경 가능)

마.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 또는/및 내용

- (프로그램 운영)
 -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지역농수산물 이용 등
- (프로그램 내용)
 - ☞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문화유산 강연·공연, 폐기물 업사이클링, 자연유산 모니터링, 문화유산 탐방과 관련된 플로깅, 그 외 친환경 농업활동 등

5.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 관람객수, 관람객 만족도, 홍보효과, 일자리 창출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계량목표(예상) 기재**
-

6. 사업 추진경과

(단위 : 천원)

| 연도 | 사업명 | 사업내용 | 소요예산 (국비지원액) | 재원 |
|----|-----|------|-----------------|----------|
| | | | | ex. 문화재청 |
| | | | | ex. 교육부 |

* 신청사업 또는 유사사업 최근 3년간 국비지원 실적 기재

7. 기타사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가. 최근 3년 간 개발한 체험키트 등 상품화 가능 콘텐츠 내역

| 연도 | 콘텐츠 품목 | 콘텐츠 세부내용 | 비고 |
|----|-------------|----------|----|
| | ex. 체험키트 | | |
| | ex. 여행 프로그램 | | |

나. 언론보도 ☞ 행사에 대한 호평 등 중점 보도내용이 있을 경우 최대 3건 이내 기재
(행사일정 등 단순 소개 보도는 제외)

| 보도일자 | 언론사 | 보도내용(기사명, 주요내용 등) | 비고 |
|------|-----|-------------------|----|
| | | | |
| | | | |

8. 예산편성 내역서

가.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 계 | 국비(40%) | 지방비(60%) | | 기타 (민간단체 자부담 등) |
|---|---------|----------|----|--------------------|
| | | 광역 | 기초 | |
| | | | | |

나. 예산편성 총괄표

(단위 : 천원)

| 목 | 세목 | 세부내용 | 산출내역 | | | 금액 | 비고 |
|---|----|------|------|-------|-------|----|----|
| | | | 단가 | 식/개/명 | 월/회/일 | | |
| | | | | | | | |

| 인건비 (110) | 일용임금 (04) | | | | | | |
|----------------|-------------------------|--|--|--|--|--|--|
| 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 (01) | | | | | | |
| | 공공요금 및 계세 (02) | | | | | | |
| | 임차료 (07) | | | | | | |
| | 재료비 (11) | | | | | | |
| | ⋮ | | | | |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 | | | | |
| 업무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 (01) | *사업 예산(국비, 지방비 합계)의 1% 이내 (1% 이내여도 1,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 |
| 계 | | | | | |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
(단,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는 편성 할 수 없음)

* 자료 작성 시 【붙임】 2024년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예산지원 범위를 참조

추가지원 신청서
- 20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

| | | | | | |
|--|---|-------------------|----------|-------|----------------------------|
| 본 사업명 | | | | 사업 구분 | 생생, 향교·서원, 전통산사, 고택종가집 중 1 |
| 실감콘텐츠명 | | | | | |
| 대상문화유산 | * 문화유산 명칭(종별) 순으로 기재 예시: ○○○○(국가민속), ○○○○(도유형) 3개 이내의 주요 문화유산만 기재 | | | | |
| 사업비 (단위 : 천원) | 계 | 국비 (40%) | 지방비(60%) | | 비고 (자부담) |
| | | | 광역 | 기초 | |
| 실감콘텐츠 세부내용 | ① 정보통신기술(ICT) 종류 | | | | |
| | ② 개발기간 | ○월 ~ ○월(○개월) | | | |
| | ③ 운영기간 및 횟수 | ○월 ~ ○월(○개월)/ ○○회 | | | |
| | ④ 운영장소 | | | | |
| | ⑤ 주제(컨셉) | ○ | | | |
| | ⑥ 콘텐츠 내용(줄거리, 특성 등) 요약 | ○ ○ ○ | | | |
| 지자체 | 지자체명 | | 부서명 | | |
| | 담당자 성명(직위) | | 이메일 | | |
| | 담당자 연락처 | (사무실) | | (휴대폰) | |
| 2023년 월 일 신청인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직인) | | | | | |
| 문화재청장 귀하 | | | | | |
| 첨부 : 실감콘텐츠 개발 계획서(안) 1부. 끝. | | | | | |

20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실감콘텐츠 개발 계획서(안)

1. 본 사업명 :

2. 실감콘텐츠명 :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실감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필요성을 기재

-
-

4. 콘텐츠 주제(컨셉)

가. 정보통신기술(ICT) 종류 :

나. 콘텐츠 주제(컨셉) : ☞ 주제(컨셉), 기획의도, 차별성, 특수성 등을 기재

5. 콘텐츠 내용 및 관련 이미지

가. 내용(줄거리, 특성 등) ☞ 콘텐츠의 내용, 줄거리, 특성 등을 핵심적으로 기재

-
-

나. 관련 이미지 ☞ 현장 이미지, 유사 사례 이미지 등을 저용량으로 첨부

6. 개발 및 운영계획

가. 개발기간 : 2024년 ○월 ~ ○월(○개월)

나. 운영기간 및 횟수 : 2024년 ○월 ~ ○월(○개월)/ ○○회

다. 운영장소 :

라. 운영계획

-
-
- ☞ 모객방법(자유관람, 예약관람 등), 본 사업(세부 프로그램)과의 연계방법 등 세부사항 기재

7.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
- ☞ 해당 콘텐츠 체험 인원수, 관람객 만족도, 홍보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계량목표(예상) 기재

8. 그 밖의 참고사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
- ☞ 유사사업 실적, 기반구축 현황 등 심사 시 고려할만한 사항, 신청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참고자료(언론, 전문지 보도 등)가 있을 경우 작성(이미지는 저용량으로 첨부)

9. 예산편성내역서

가.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 계 | 국비(40%) | 지방비(60%) | | 기타 (민간단체 기부금 등) |
|---|---------|----------|----|--------------------|
| | | 광역 | 기초 | |
| | | | | |

나. 예산편성 총괄표

(단위 : 천원)

| 목 | 세목 | 세부내용 | 산출내역 | | | 금액 | 비고 |
|----------------|----------------------|--|------|-------|-------|----|----|
| | | | 단가 | 식/개/명 | 월/회/일 | | |
| 인건비 (110) | 일용임금 (04) | | | | | | |
| 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 (01) | | | | | | |
| | 공공요금 및 제세 (02) | | | | | | |
| | 임차료 (07) | | | | | | |
| | 재료비 (11) | | | | | | |
| ⋮ | | | | | |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 | | | | |
| 업무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 (01) | *사업 예산(국비, 지방비 합계)의 1% 이내 (1% 이내여도 1,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 |
| 계 | | | | | | |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
(단,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는 편성 할 수 없음)
- * 예산지원 범위 등 기타사항은 【붙임】 2024년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예산지원 범위를 참조

[붙임]

2024년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예산지원 범위

1. 예산 지원내용

- 보조금 예산 편성은 다음의 법령, 훈령, 예규에 따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구분 | 내 용 | 지급범위 | 비 고 |
|-------|--|--|--------|
| 인건비 | 1.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 진행보조 - 사업총괄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 지자체별 사업 특성·여건 등에 따라 판단 | 별첨1 참고 |
| | 2. 보조원(일용직) * 1인 1일(평일 9:00~18:00/8시간) 기준으로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 |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 | |
| 운영비 | 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구 등) | 실 비 | |
| |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비 | 견적가 | |
| | 3. 안내·홍보물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제작비 - 간판, 상패 등 제작비, 참여자 모집을 위한 문자, SNS 사용비 | | |
| | 4. 의약품 구입비 : 관람객을 위해 구입하는 의약품 | 실 비 | |
| | 5. 프로그램 운영 관련 소모성 재료비 - 교구 및 교재 등 구입, 기념품 제작비, 복장비 등 | 실 비 | |
| | 6. 업무위탁대가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소규모 용역대가, 사례금 등 - 강사수당, 자문·지도 수당, 공연(출연) 수당, 원고료, 회계검증 | 지자체별 사업 특성·여건 등에 따라 판단 | 별첨1 참고 |
| | 7.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 실 비 | |
| | 8. 임차료 (버스임차료, 강의실 등 임차료, 시설임차료 등) | 실 비 | |
| 여비 | 1. 근무지내 출장(동일지역) |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 |
| | 2. 근무지외 출장(타지역) ○ 일비, 식비/ 교통비(대중교통, 자가용 등)/ 숙박비 | | |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업무협의, 간담회 등의 경비 | 전체 예산의 1% 이내 (1% 이내에도 1,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별첨1>에 제시된 금액을 기준을 하되, 프로그램의 특성·여건 등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별 적정 대가기준 별도 수립 가능
- ※ <별첨1>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규정에 의거, 지자체별 사업특성·여건 등에 따라 자체 판단 적용
- ※ '24년부터 운영비 중 기획비 삭제 (보조사업 감사결과 반영)

2. 예산 편성 시 주의사항

- 사업비는 지역문화유산 활용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 인건비 과다 편성 지양(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 총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지자체 장의 승인을 얻어 편성)
 - 1인에게 지급되는 총 경비(인건비, 수당 등)가 당해 연도 인건비 상한액 기준 초과 시, 집행 불인정
- 숙박 프로그램 및 체험이나 답사 프로그램은 참가자 실비범위 내에서 가급적 유료화하여 필요경비 일부 증당 및 참가자 참여율 제고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해야하며, 포괄적으로 편성해서는 안 됨
 - 제작비, 예비비, 잡비, 일비 등 구체적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매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아야 함
- 재료비는 세부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만 인정 (노트북, 컴퓨터, 앰프 등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 회의 관련 경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사업의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진행보조(임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당해연도 최저임금(최저시급) 준수

※ 지출 불가 항목

- 조명시설 설치 등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및 단순 사무보조 인건비(초과근무수당 포함)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일상적 환경 미화 등 기관(단체) 운영비
- 상근인력 사례비(강사료), 학술대회, 내부직원 대상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경비
- 상품권, 기념품, 답례품 등 행사지원경비(단, 일반인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제외하나, 경비 편성을 최소화하여야 함)

(별첨 1)

가.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 진행보조 인건비

○ 사업 총괄 및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 구분 | 지급액 기준 | 비고 |
|----------|--|--|
| 총괄 책임자 | - 사업 총괄 책임을 맡은 인력으로 회계 사후관리 등 사업 총괄 책임자 (참여율 50% 기준) 2,681,226원/월 | * 자격기준은 문화유산 관련분야 또는 활용 및 관광 관련분야 전공 경력 등에 대하여 지자체별 자체판단 *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가 강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해의 수당만 지급중복지급 불가 |
| 사업 관리자 | - 사업추진 실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진행자 1,344,277원/월 (참여율 50% 기준) | * 지급액 기준은 '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임('24년 사업추진시 '24년 기준단가로 변경 적용) |
| 진행 보조 인력 | -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보조, 안전관리, 무대설치 등 사업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 인력 당해 최저임금×시간 | |

* 참여율은 당해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참여비율을 말하며, 타 사업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타 사업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으로, 1개월 100% 기준금액은 2를 곱해야 함

(예시) 총괄책임자가 참여율 20%로 2개월간 수행한 경우 (2,681,226원×2) × 20% × 2개월

* 인건비는 원천징수세액을 제하고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하고, 원천징수세 납부내역을 정산자료에 첨부

나. 자문·지도 수당

| 구분 | 내 용 | 단가(천원) | |
|---------|---|--------|-----|
| 자문지도 수당 | 심사 및 자문료 - 문화유산 활용사업 관련 교육, 정책·운영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내부 참여인력은 지급불가) - 분임활동을 지도·평가하는 강사 등 | 1일당 | 100 |

*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또한,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다. 강사수당

| 구분 | 자격 기준 | 지급액(천원) | | 비고 | |
|----|---|---|----------|----------|--|
| 1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화재청(시도) 문화재위원 -대학교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 -전·현직 차관(급) 이상 -대기업총수(회장), 국영기업체 사장 | 최초 1시간 | 300 | |
| | | | 초과 (시간당) | 150 | |
| 2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문화재청(시도) 문화재전문위원 -대학교 관련학과 조교수 및 전임강사 | -문화예술분야 강사 자격증 소지자 로서 강의 경력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 최초 1시간 | 200 | |
| | | | | 초과 (시간당) | |
| 3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 | -문화예술분야 강사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최초 1시간 | 150 | |
| | | | | 초과 (시간당) | |
| 4급 | -1급~3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급~3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초 1시간 | 100 | |
| | | | | 초과 (시간당) | |

라. 공연 및 출연수당

| 구분 | 자격 기준 | 지급액(천원) | | 비고 |
|----|--|---------|-----|---|
| 1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공립예술단체 예술감독 -대학교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 1시간 | 550 | 30분 이상일 경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50%만 지급 |
| 2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국공립예술단체 악장, 지도위원 -대학교 관련학과 조교수 및 전임강사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 1시간 | 450 | |
| 3급 | -국가(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 -국공립예술단체 단원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 1시간 | 350 | |
| 4급 | -1급~3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시간 | 250 | |

※ 동 기준에 의거 단가를 산정하되, 공연 난이도, 지명도, 공연 규모,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음.

마. 원 고 료

| 구 분 | 지 급 기 준 | 비 고 |
|-------------|--|--|
| 지급단가 | 12,000원 / A4용지 1면 | (지급 규격)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 지급한도 (기준면수) | 1) 강의 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2)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
|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 |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 |
| 원고지 |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 |
| 수정원고 등 | 1)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수정시 : 전체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원고의 50%지급 - 30% 미만 수정시 : 미지급 2)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 미지급 | ※ 다만 교육시기 및 대상, 교육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 지급가능 |

바. 작곡료 및 편곡료

| 구분 | 내 용 | 지급액 (천원) |
|-----|--|----------|
| 편 곡 | 1 등급 - 국내·외 국립 국악 및 교향악단 급 이상의 공연 또는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5년 이상 있는 자 - 문화유산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 경력 15년 이상인 자 | 500 |
| | 2 등급 - 국내 시·구립 국악 또는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있는 10년 이상 있는 자 - 문화유산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경력 10년 이상인 자 | 400 |
| | 3 등급 - 국내 음악관련 대학, 민간 국악공연,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 문화유산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경력 5년 이상인 자 | 300 |
| 작 곡 | -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가능 | |
| 감수료 | - 감수료는 등급 무관 | 50 |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인 경우, 원 편곡의 ½만 지급

*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까지 지급 가능